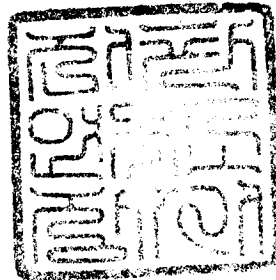


RRL
89-01

0000

電波管理 手數料体系의 適正化研究

1989. 12.



主管研究機關名：電波研究所
韓國通信學會

提 出 文

電波研究所長 貴下

本 報告書를 “電波管理 手數料 體系 適正化 研究”에 關한 最
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89. 12.

主管研究機關名: 한국통신학회

總括研究責任者: 이 진 (한국항공대학 교수)

選 任 研 究 員: 진 용 옥 (경희대학교 교수)

研 究 員: 육 재 림 (전파연구소)

 강 찬 희 (상지전문대 교수)

 강 영 홍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고 봉 진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研 究 補 助 員: 염 호 선 (전파연구소)

 이 인 호 (전파연구소)

 김 상 용 (전파연구소)

 송 주 빈 (경희대 석사수료)

 진 종 오 (전기통신사편찬연구위원회)

要 約 文

1. 題目：電波管理 手數料 體系의 適正化 研究

2.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現在의 電波管理 手數料體系는 電波管理法 制定 當時 規定된 概念으로서 使用料에 立脚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電波利用의 多樣化, 技術環境 變化 및 經濟發展에 따른 새로운 電波 手數料의 概念이 登場하게 되어 現行 手數料 體系의 適正 與否에 대한 分析和 合理化 方案의 提示가 切實히 要望된다.

3. 研究의 內容 및 範圍

電波管理 手數料의 現況分析和 賦課 妥當性を 糾明하고 料率分析을 한 다음 國內外 手數料와 比較 分析하여 現行 電波管理 手數料의 料率調整을 導出하여 手數料 體系의 合理化 方案을 模索하였다.

4. 研究結果

電波管理 수수료와 요금체계의 現況을 分析하여 問題點을 導出, 不合理한 수수료 율을 合理的으로 調整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電波管理 수수료 체계의 合理化 方案으로 수수료 體系의 改善, 수수료 율조정 前例化를 建議한다. 最終的으로 電波管理和 研究開發 財源確保를 위한 電波使用料 徵收 方案을 提示하였다.

5. 研究의 기대성과 및 活用方案

電波管理 수수료체계의 合理化 方案을 土臺로 하여 全般的인 수수료 재편이 必要하며 이 때 基礎資料로 活用할 수 있다.

한편 電波產業 進興의 側面에서 電波使用料 徵收制度의 導入이 期待되며 向後 法令 制定 및 改正時에 主要 基礎資料로 使用될 수 있을 것이다.

目 次

要 約 文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2
第 2 章 電波管理 概要	3
第 1 節 電波管理의 意義	3
1. 電波의 概念	3
2. 電波의 利用	3
第 2 節 電波管理의 必要	5
第 3 節 電波管理 行政機構	6
1. 組織體系	6
2. 管掌事務	7
第 4 節 電波管理 行政機能	8
1. 無線局 許可	8
2. 無線局 檢査	10
3. 無線從事者 管理	12
4. 電波監視	13
5. 電波研究	14
第 3 章 電波管理 手數料 制度의 現況	15
第 1 節 手數料의 意義	15
1. 手數料의 概念	15
2. 手數料의 基本性格	16
第 2 節 電波管理 手數料의 賦課 妥當性	17
1. 受益者 負擔	18
2. 受益者 負擔의 根據	18
3. 受益者 負擔의 性質	18

第 3 節 電波管理 手數料의 體系	20
1. 構 成	20
2. 料率體系	23
第 4 節 電波管理 手數料의 稅入現況	28
1. 電波管理 手數料 稅入의 總體的 規模	28
2. 電波管理 手數料 稅入推移	29
3. 電波管理 手數料別 稅入現況	29
第 4 章 電波管理 手數料 體系分析	31
第 1 節 電波管理 手數料 變遷過程	31
1. 調整內容	31
第 2 節 電波管理 手數料의 料率分析	34
1. 料率分析 節次	34
2. 서비스 原價와 實費報償率	35
第 3 節 國內 他部處의 類似 手數料와의 比較 分析	55
1. 許可手數料	55
2. 試驗(資格檢定) 手數料	57
3. 資格證 發給 手數料	59
第 4 節 外國의 電波管理 手數料 比較分析	60
1. 無線局 許可申請 手數料	60
2. 無線局 檢査 手數料	61
3. 無線機器 形式檢定 手數料	62
4. 無線從事者 技術資格 檢定에 關한 手數料	63
第 5 節 現行 電波管理 手數料 體系의 問題點	64
第 5 章 電波管理 手數料 料率決定	65
第 1 節 手數料 料率決定의 基礎理論	65
1. 手數料 料率의 意義	65
2. 手數料 料率의 決定原則	65
3. 手數料 料率構造의 合理性 平價基準	68
第 2 節 電波管理 手數料 料率決定에 對한 接近	69
1. 電波管理 手數料 料率決定의 限界性	69
2. 電波管理 手數料 料率決定의 基準 및 方法	70

第 6 章 電波管理 手數料의 料率 調整	71
第 1 節 電波管理 手數料 料率調整의 必要性	71
1. 收支現況	71
2. 赤字要因	71
第 2 節 手數料 料率 調整時 考慮事項	72
1. 一般的 規則	72
2. 手數料의 料率 策定指針	73
第 3 節 現行 電波管理 手數料 體系 및 料率調整	74
1. 無線局 許可申請 手數料 料率調整	75
2. 無線局 檢查 手數料 料率調整	76
3. 無線從事者 技術資格 檢定 手數料 料率調整	77
4. 無線機器 形式檢定 手數料 料率調整	77
第 7 章 電波管理 手數料 體系의 合理化 方案	80
第 1 節 電波管理 手數料의 體系 改善	80
第 2 節 電波管理 手數料의 料率調整 定例化	81
第 3 節 電波管理 財源 確保를 爲한 稅入의 發掘	81
1. 電波使用料 賦課의 當爲性과 必要性	81
2. 賦課 名稱	82
3. 電波使用料 賦課基準	87
4. 電波使用料 賦課單位	87
5. 賦課主體 및 賦課方法	89
6. 賦課規模 推定	90
第 4 節 電波管理의 專門化	91
第 8 章 結 論	92
* 參考文獻	94
* 附錄目次	95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情報化社會의 成熟期를 앞두고 電波의 이용증대 및 多樣化와 기술환경이 보다 複雜하고 高度化 함에 따라 電波管理 기술의 專門化와 高度化가 要求되고 있다.

이에 副應한 効率的인 電波管理를 爲해서는 電波管理 體系의 變化와 서비스형태의 變化가 必然的으로 隨伴하여야 하며, 電波管理 수수료 體系등 電波管理 體系 및 서비스형태의 變化에 相應하여 改善되어야 만이 電波管理 分野의 發展은 물론 電波를 基盤으로 한 關聯事業의 發展과 아울러 國家 經濟의 安定的 成長과 國民의 福祉增進을 圖謀할 수 있는 與件의 造成이 可能하다고 하겠다. 즉, 電波管理 體系와 電波管理 手數料 體系는 相互 直接的인 連繫 關係를 갖고 있는 바, 電波管理 體系는 電波管理 手數料 體系를 결정지으며 또한 電波管理 體系에 相應하는 手數料 體系가 形成되지 못할 경우 電波管理 體系의 維持 및 電波利用 發展은 不可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現行 電波管理 수수료 체계에 관한 充分한 檢討와 段階的 改善 努力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특히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결정은 뚜렷한 原則이 없다는 指摘도 있고, 原價에 대한 分析이 不足하며, 政治的 내지 행정적인 影響을 排除하진 못하는 傾向이 있다. 또한 他 分野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關心과 研究가 低調하여 急速한 기술 발전에 의한 費用原價 構造의 변화와 經濟發展에 따른 社會的 여건변화에 적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수가가 서비스 利用에 대한 對價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수료 제도는 利用의 對價가 누구에게 어떻게 配分되며,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이용의 便宜를 증진하고 公評한 배분이 되는가를 결정해 주는 道具이다” 이에 電波管理 수수료는 機能的面으로 電波管理에 必要한 財源을 확보하여 電波管理 서비스의 水準을 향상시키는 한편 電波 利用者가 效果的으로 電波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電波管理 수수료의 요율결정 原理와 模型에 대하여 考察하고 合理的인 電波管理 수수료 요율 算定을 위한 總요금 수준을 把握하므로서 電波管理 수수료 체계의 現況과 問題點을 分析하여 全般的인 電波管理 수수료 체계에 대한 改善策을 提示하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本 研究의 對象과 範圍는 다음과 같다.

첫째, 電波管理 수수료의 위치를 認識하기 위하여 電波管理와 電波管理 수수료를 규명한다.

둘째, 電波管理 수수료의 本質的인 性格과 構成을 살펴본다.

세째, 電波管理 수수료의 요금 체계를 比較 檢討하고 再調整을 위한 合理的인 基準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電波管理 수수료 種目別로 서비스의 原價를 分析하여 요금 산정의 基礎로 삼는다.

넷째, 國內外 類似 수수료 요금의 水準을 比較 檢討한다.

다섯째, 電波管理 財源의 確保라는 見地에서 稅入 財源 發掘과 電波管理의 專門化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研究를 遂行하는 方法 및 節次는 다음과 같다.

첫째, 電波管理 수수료의 本質的 性格 및 그 요금책정의 理論的 基礎는 國內 文獻을 통하여 考察한다.

둘째, 現行 電波管理 수수료 수입의 현황과 수수료 원가에 관한 것은 各種 統計資料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蒐集한다.

세째, 수수료의 원가 산정은 調査票를 통하여 分析하고, 이 資料에 의하여 蒐集된 것을 基礎로 수수료 요금책정의 原則 및 方法을 適用하여 電波管理 수수료의 調整案 및 體系를 適正化하기 위한 綜合的인 意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第 2 章 전파관리 개요

第 1 節 전파관리의 의의

전파관리란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무선국의 허가, 무선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의 제정시행, 형식검정의 실시, 무선종사자관리, 무선국의 운용, 감독 및 검사, 주파수 할당, 전파감시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전파의 합리적 사용이나 무선통신 운용의 효율성과 능률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전파자원의 확보에 제반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1. 전파의 개념

전파란 광의의 의미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것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우주선 등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협의의 의미로는 무선통신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단순히 전파라 지칭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전자렌지, 리모콘, 무선전화기 등을 사용하므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전파와 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파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5감으로는 그 존재를 직접 감지할 수 없다.

이러한 전파는 물질이나 고무줄의 흔들림과 같은 타동으로 전기의 흐름에 인위적인 충동을 주어 타동을 발생시켜 이를 공간에 복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전파는 자유공간을 퍼져 나가는 전기, 자기적 성질을 가진 파동을 말한다. 따라서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에 규정한 “전파 또는 헬쯔파는 인공적인 도인 없이 공간을 전파하는 3,000GHz 보다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로 정의할 수 있다.

전파의 단위는 1초동안에 반복, 발생하는 파동의 수로 나타낸다.

초기에는 이를 파동의 형태를 의미하는 싸이클 (Cycle)이라고 지칭하다가 전파의 존재를 확인한 독일의 물리학자 헬쯔 (Heinrich Rudolph Hertz)의 이름을 따서 헬쯔 (HZ)를 주파수의 기본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2. 전파의 이용

인류가 전파의 존재를 발견한 것은 지금부터 100년간의 일이다. 1888년 독일의 ‘헤

르츠'박사는 전파의 존재를 실험으로 증명하였으며 1895년 이탈리아인 마르코니는 무선전신을 발명하여 실용화 하였다. 그 이후 전파이용의 발전은 다른 어느 분야 보다도 놀라울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오늘 날에는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무선통신망이 아니고 선박항공기의 항행과 이 착륙 등의 안전을 위한 “방향탐지”목표물의 존재를 사전에 탐지하는 “레이다”무선항행 장비인 “로란”등 각종 원격조정, 원격제어 및 기상관측 분야는 물론 목조건조용 가열장치, 비닐 접착장치 등의 의료용 설비에 이르기 까지 그 이용분야는 급속히 증가 확대일로에 있다.

<표 2-1>은 전파의 부문별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1> 전파의 부문별 이용현황

이용부문	이 용 분 야	주파수대	이용목적 방식	이 용 현 황
통신부문	○ 고정통신			
	－기간통신	M/W, VHF	장거리통신, 전화, 팩시밀리, 데이터방송 중계	전국 장거리회선의 24%
	－도서통신	VHF, UHF	공중통신 서비스	전국유인도서의 97%
	－자가통신	HF, VHF, UHF	전신, 전화, 팩시밀리, 데이터	
	－국제통신	HF, SHF	국제전화, 방송중계	국제회선의 83%
	○ 이동통신			
	－육상이동	VHF, UHF	전화, 방송중계	자동차무선, 무선폭출 등
	－해상이동	MF, HF, VHF, UHF	원근해 선박통신	선박항행, 안전기상통신
	－항공이동	HF, VHF, UHF	장거리 항공통신	항공관제, 운항관리통신
방송부문	○ 표준방송	525.5－1606.5 KHz	국제라디오 방송	음성방송 : AM
	○ 단파방송	6－26 MHz	국제라디오 방송	음성방송 : AM
	○ FM방송	88－108 MHz	국내라디오 방송	음악방송 : FM
	○ TV방송	54－216 MHz 500－752 MHz	국내 TV방송	영상 : AM 음악 : FM
	○ 위성방송	11.7－12.2 GHz	국내 위성방송	주파수 확보
기타부문	○ 고주파 이용설비	HF, VHF, UHF, SHF	공업, 화학, 의료용 설비	고주파유도 가열기, 의료용 치료기, 기타 가전제품
	○ 무선표정, 항행원조	VLF, LF, MF, HF, VHF, UHF SHF	선박,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위치, 방위, 거리측정 등	오메가, 로란, 고주파계 VOR, DME, 위성항법 시스템 등

第 2 節 전파관리의 필요성

전파는 물리적 특성상 공간을 자유로이 전파하기 때문에 동일 공간에 동일 주파수가 존재하면 상호혼신이 발생하여 정보전달 기능이 감소 또는 상실되며 국경에 관계없이 전파되므로 근접국가에 영향을 미쳐서 국제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희소성이나 물리적 특성의 문제점만으로 관리의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경제적 가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져야만 하겠다.

전파의 경제적가치를 살펴보면 전파는 광의의 재화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전체에 있어서 욕구충족 수단으로서 재화의 존재량은 경제적 욕망에 비하여 희소하므로 경제행위는 욕망충족의 희소성이라는 조건하에서 행하여 지는데 이 사실을 “희소성의 원리 (Principle of scarcity)”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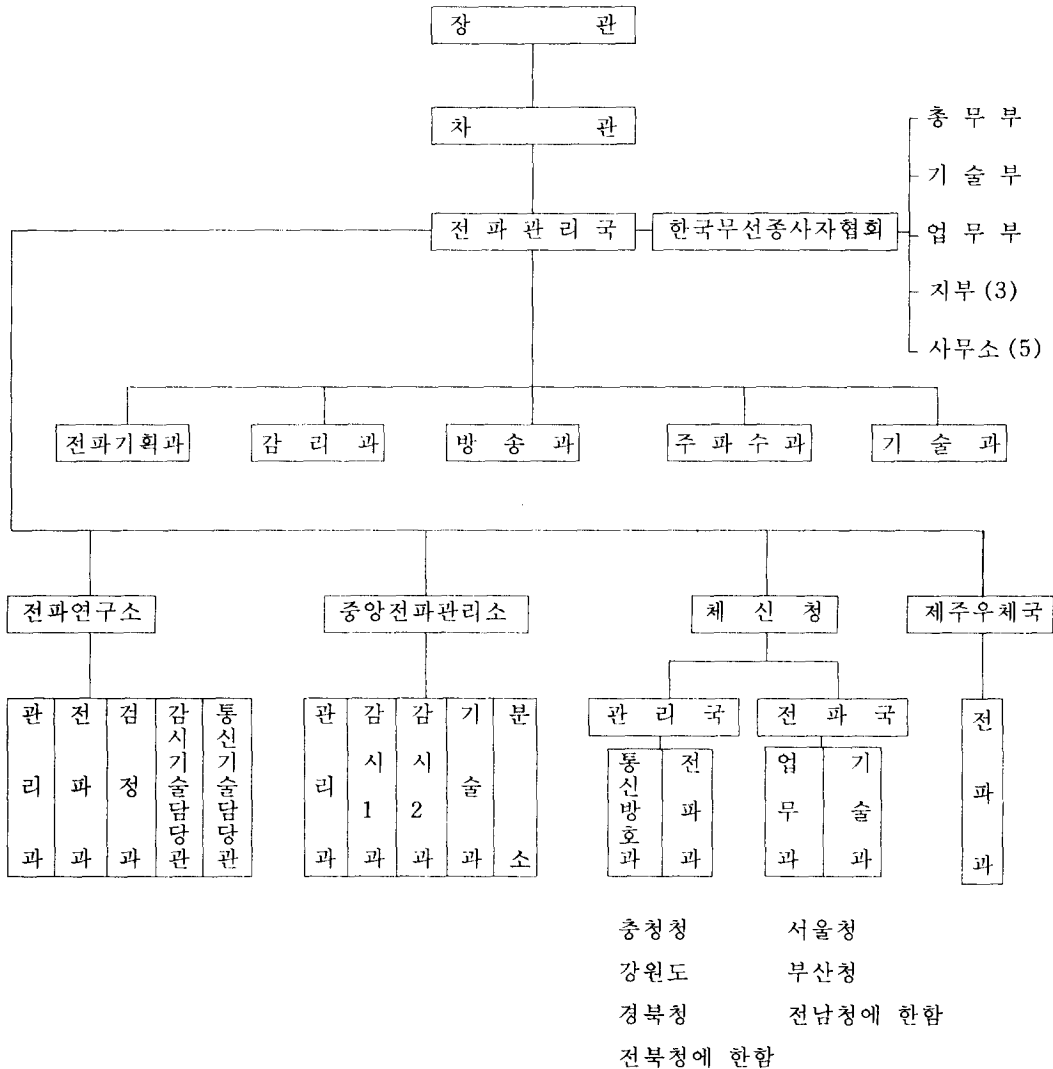
전파를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용 가능한 전파자원은 유한하고 특정 주파수의 스펙트럼에서는 밀집동의 현상으로 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희소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전파의 이용으로 인간에게 일정 목적의 혜택을 주게되므로 인간의 욕구충족 대상으로서 경제재에 해당하며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는 경제활동의 한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이러한 전파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질서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감독하여 이용자들이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며, 전파이용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국민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第 3 節 전파관리 행정기구

1. 조직체계



<그림 2-1> 전파관리 기구

2. 관장사무

가. 전파관리국

전파관리국은 전파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과 전파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방송방식 및 방송국 설치계획, 전파관리에 관한 국제 기구 및 외국 주 관청과의 연락 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 주파수 이용 계획 수립 및 전파관리시설의 건설 계획 수립과 조정을 관장한다.

나.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는 전파연구의 종합계획 및 조정과 전리층 및 표준전파에 관한 연구, 무선시설의 기술기준, 무선기기의 형식검정, 등 기준연구 및 무선통신기기 생산품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다. 중앙전파관리소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및 경제적인 이용도모를 위하여 무선국 운용에 있어서 각종 전파 법규의 준수 여부를 조사, 지도 및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각종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라. 체신청 및 직할우체국

체신청 전파국 또는 전파과(충청, 강원, 경북, 전북청에 한함) 및 제주 우체국 전파과에서는 무선국 및 고주파 이용설비의 허가 및 취소, 무선국의 운용감독,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등에 관한 업무,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및 호출부호의 지정, 무선국 및 고주파 이용설비의 검사 및 법령에 위반한 전파의 단속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한국 무선종사자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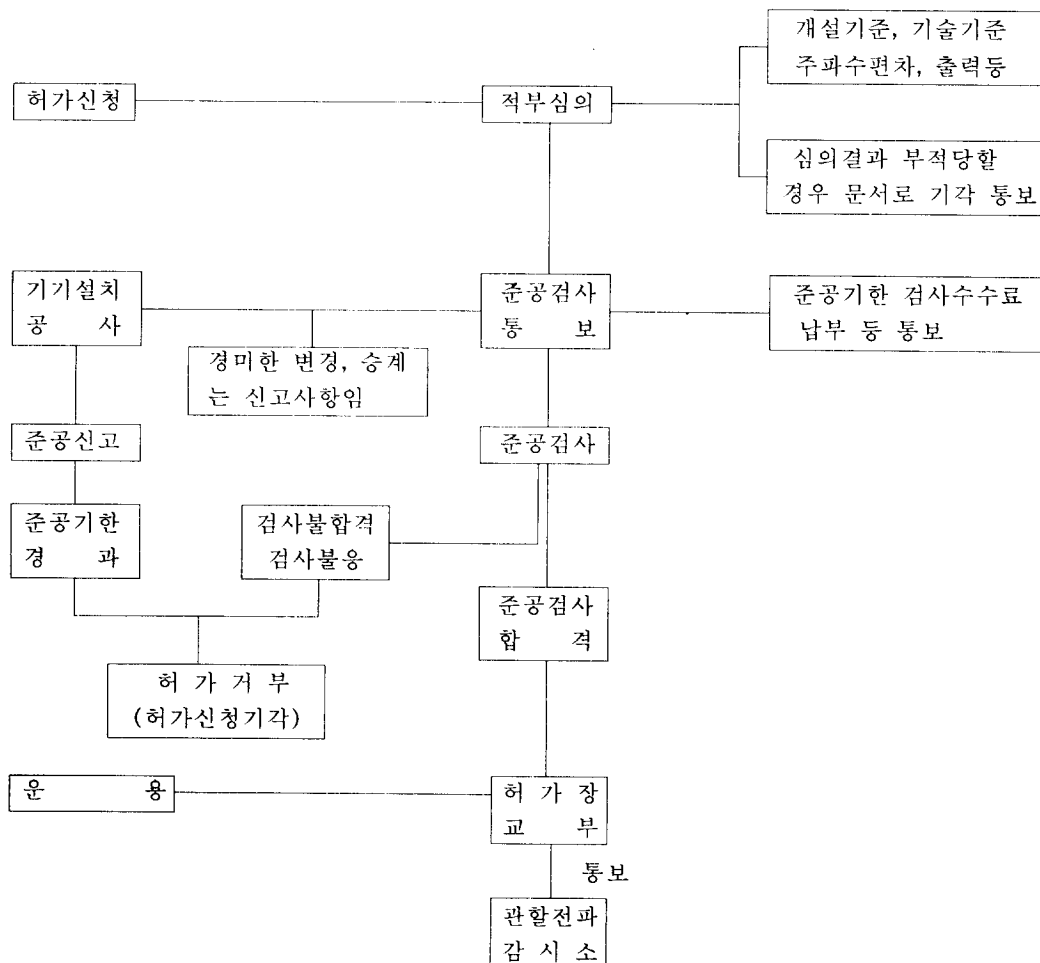
행정의 현지성과 능률성 확보 및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조사, 검정, 검사 등 특수 전문지식, 기술 등 민간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전파관리의 전문화, 신뢰성확보 및 전파이용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실기시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검정은 제외), 무선종사자의 통신보안교육, 무선국의 검사(체신부장관이 정한 무선국에 한함),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에 대한 무선종사자의 선임, 해임신고의 수리, 무선국의 폐지, 운용휴지 신고의 수리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등록 접수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第 4 節 전파관리 행정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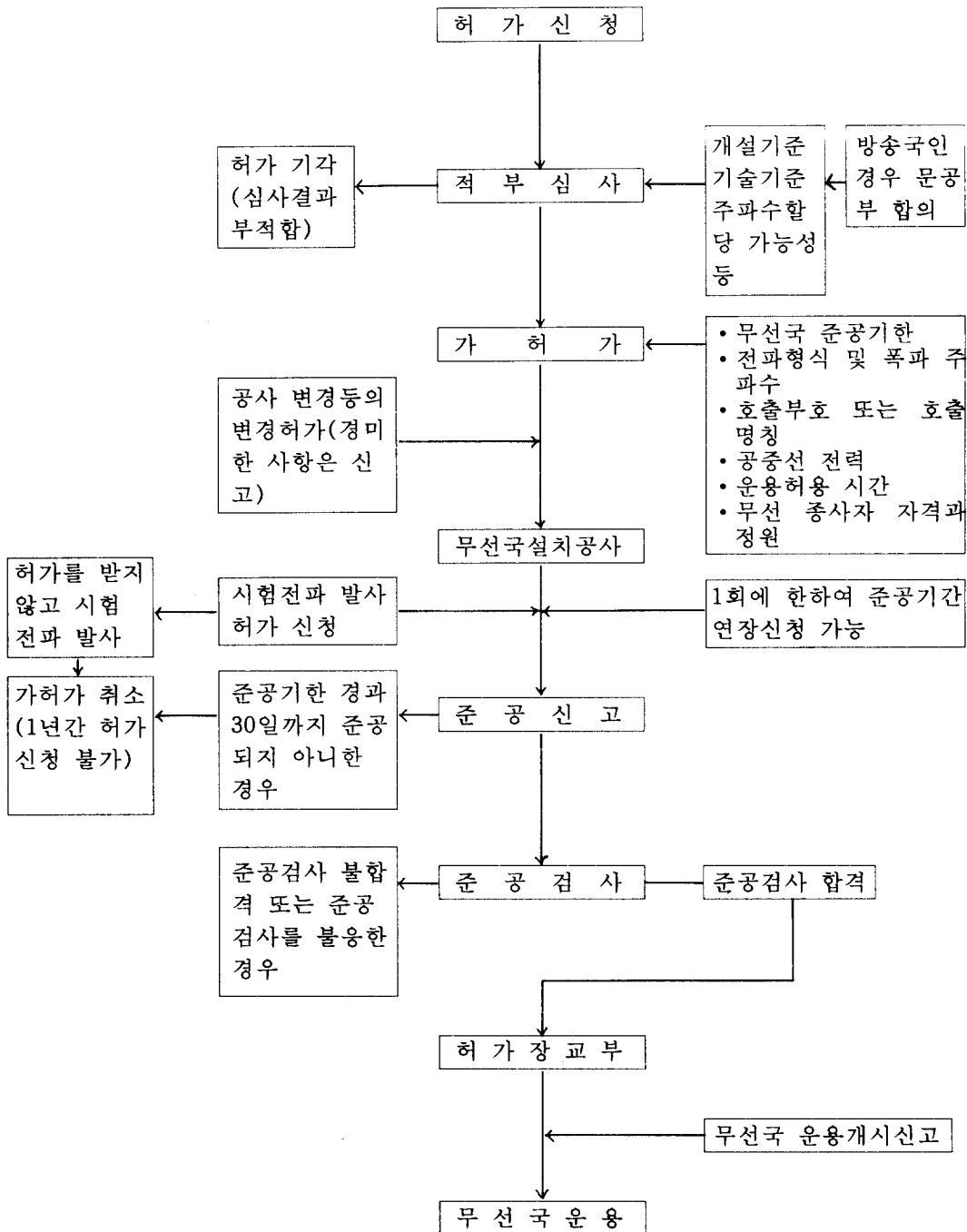
1. 무선국 허가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법인, 공공단체, 국가기관(군용통신 제외)등 누구든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제한된 전파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으로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무선국 허가는 신규허가, 변경허가 및 재허가의 세 경우로 구분되는데 무선국을 신규로 개설코자 할 때는 물론 기존 무선국의 시설을 변경코져 할 때와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무선국을 운용코져 할 때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림 2-2> 무선국 허가신청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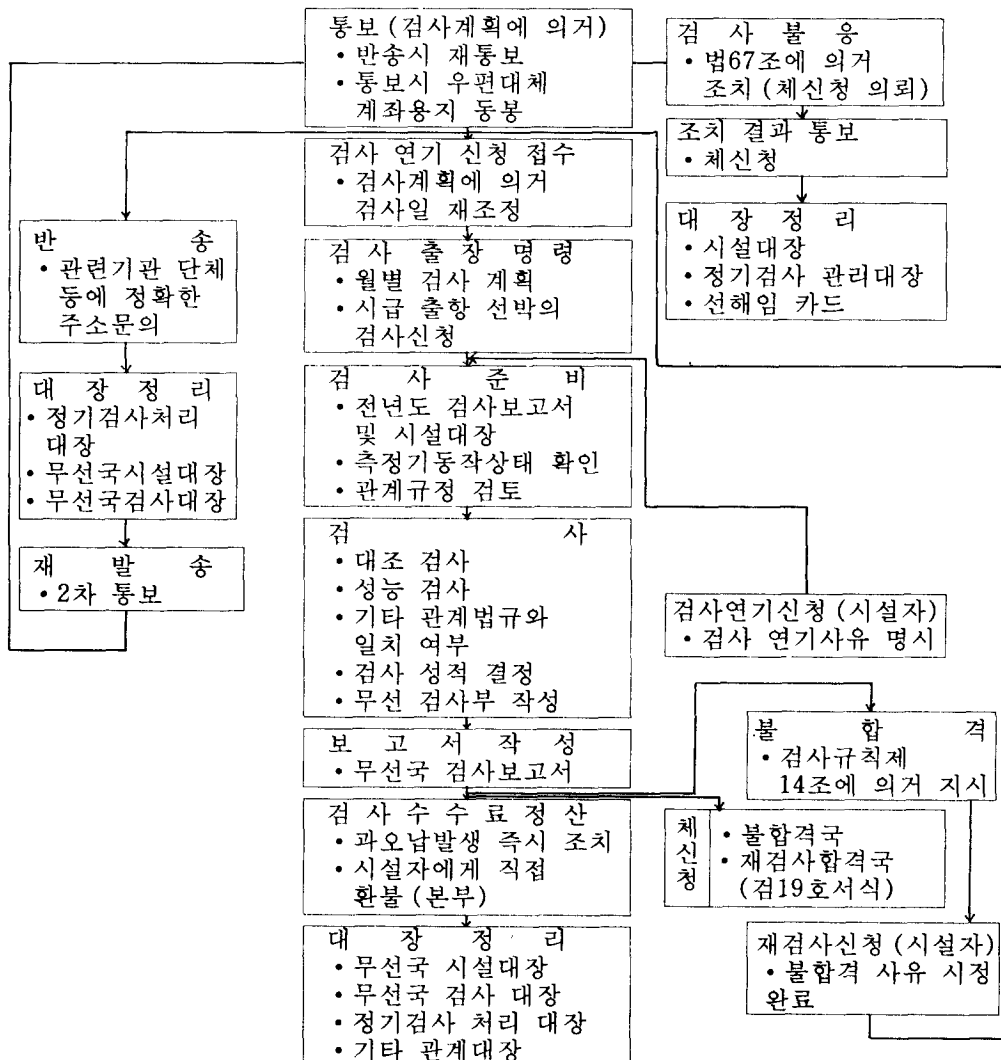
- 1) 모든 무선국은 허가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처리했다.
- 2) 간이한 허가절차로 처리되는 무선국은 [가허가] - [준공검사] 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고 이루어진다.

<그림 2-3> 고주파 이용설비의 허가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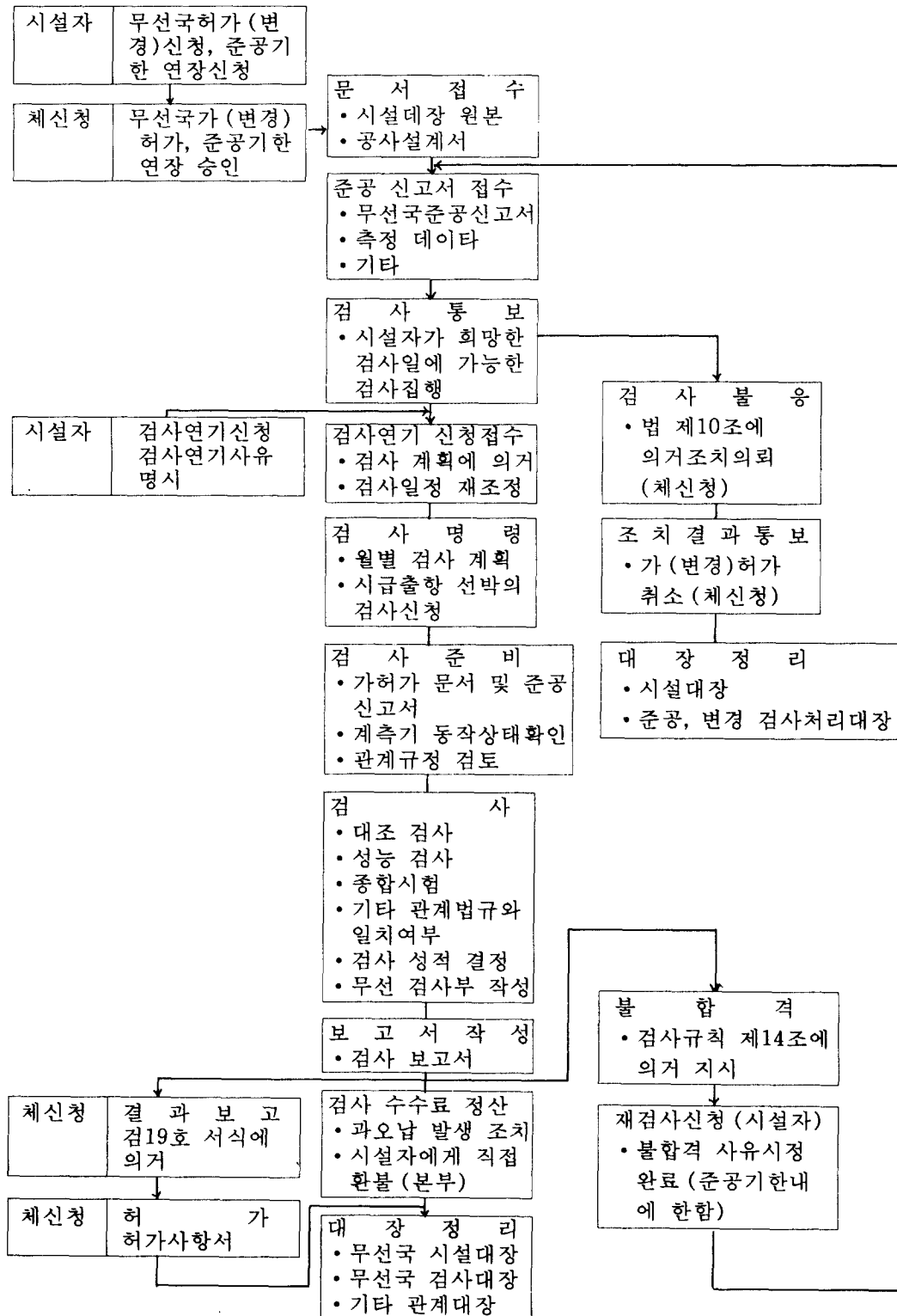
2. 무선국 검사

무선국 검사는 전파관리 법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전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수단으로서 체신부장관이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검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무선국 검사는 전파관리상 감독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방법에서 전파감시업무와 구별된다.

무선국 검사는 허가시에 수반되는 검사와 허가된 기존 무선국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를 허가절차상 행하는 검사로서 허가업무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가허가된 무선국의 감독상 행하는 검사로서 시설 감독기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정기검사 처리 흐름도



<그림 2-5> 준공(변경)검사 처리 흐름도

가. 절차상 행하는 무선국 검사

절차상 행하는 무선국 검사는 준공검사와 변경검사가 있으며 준공검사는 무선국 허가신청을 하여 가허가를 얻은 시설자가 무선설비를 시설하고 준공신고를 한때에 그 설비와 당해 무선국에 배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에 대하여 무선설비 규칙 및 가허가시 지정한 사항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검사에 불합격되면 가허가가 취소된다.

변경검사는 이미 무선국의 허가를 얻어 운용하던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이나 무선설비를 변경하고자 허가관서에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얻고 그후 변경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신고를 한 때에도 허가관서는 변경허가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감독상 행하는 무선국 검사

감독상 행하는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가 있다. 정기검사는 무선국의 무선설비가 허가받은 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무선설비 규칙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는 선임신고 내용대로 배치하고 있는가. 또한 시계 및 업무서류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임시검사는 내용으로 보아 정기검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기검사가 사전에 시설자에게 검사일정을 통보하고 집행하는 검사라면 임시검사는 불시에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임시검사의 유형으로는

- (1) 전파감시상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질이 법령에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전파의 발사정지를 명한때, 그 무선국에 검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
- (2) 전파의 발사정지명령을 받은 무선국으로 부터 규정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신고가 있을때 이를 확인하는 검사
- (3)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이 무선국검사(준공, 변경,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외국에 출항하고자 할때 기타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무선종사자 관리

가. 무선종사자 선·해임 신고

규정된 전파의 질을 유지하고 혼신을 피하여 원활한 통신소통을 도모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의 자격주의가 채택되어 전파관리 법령에 일정한 자격의 종별이 지정되고 각 자격종별에 대한

조작과 공사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무선국의 운용에 종사할 유자격자를 알맞게 배치하여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종사자를 필요한 만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무선종사자를 배치하거나 해임 시킬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선임해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무선국의 인적요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무선국의 무선종사자 선임 및 해임 신고수리 업무는 체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 무선종사자 협회에서 시행하고, 방송국의 경우에 한하여 체신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나.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검정에 합격한후 기술자격 수첩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전파관리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중 일부 자격종목(전기통신 기술사, 전파통신기사 1급 및 2급, 전파통신기능사 2급, 무선설비기사 1급 및 2급, 무선설비 기능사 2급)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거 위탁 실시되고 있다.

또한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무선전화 병) 및 특수 무선기사(레이다 을) 등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실시시험에 의한 자격검정은 한국무선종사자협회에 위탁 실시 하고 있다.

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등록 및 수첩 발급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합격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전파 통신기사 1,2급 및 무선설비기사 1,2급)자격소지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마다 갱신등록하여야 한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수첩 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는 한국무선종사자협회에 위탁 실시 하고 발급업무는 서울체신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4. 전파감시

전파는 공간을 매개체로 전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를 무질서하게 이용하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국제 및 국내법으로 제규정을 제정, 관리 하고 있다.

전파감시 기능은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통신의 방식이 고도화, 다양화되고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용가능한 주파수는 한정되고 있으므로 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파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감독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파 이용상의 잘못을 시정토록 지도하는 기능으로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 및 산하 각 분소에서 고정 및 이동감시를 통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이다.

5. 전파연구

전파관리 업무는 귀중한 전파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전파의 전파연구, 전리층연구, 전파의 공해에 관한 연구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등의 연구업무와 평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무선기기 형식검정, 전기통신 기자의 형식승인, 전자파 장애측정, 주파수 원기 확보유지 및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 전리층의 관측, 울시그램(Ursigam)수신, 전파예보 및 정보, 태양측정 및 지자기 측정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업무가 전파의 원활한 이용에 직접·간접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第 3 章 전파관리 수수료제도의 현황

第 1 節 수수료의 의의

1. 수수료의 개념

수수료는 영어로 “Fess”, 독일어는 “Gebühren”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의 다른 정의를 하고 있다.

세리그만 (E.Seligman)은 “수수료란 공익을 위하지만 비용 지불자에게 가혹적인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상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지불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때 수수료는 사경제적 수입과 조세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사경제적 수입과 다른점은 공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부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와거너 (A.Wagner)는 수수료를 국가경제적 수입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의 제원으로서 공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 시키는 점에서 수수료도 조세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상 엄격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정의에 대하여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요금”이라고 한다. 이것은 행정주체가 개인에게 제공하여 준 공적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수료의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금 (Rate)과 가격 (Price)의 개념을 비교해 보자.

요금이란 경제재 중에서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화폐가치를 일컫는다. 이 중에서 특히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하며 수수료는 공공요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생산주체의 경제재 중에서 물품 (Commodity)에 대하여 지급하는 화폐가치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개념이 다음과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혼함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개념이란 공공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며 또 그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요금 또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정리하고 보다 명확한 수수료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수료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용료, 특별과징등의 개념가 그 차이를 구분해 보자.

첫째, 수수료와 사용료가 특정한 이익에 상응하여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가치라는 점과 공공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인 공공요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수수료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라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사용료와 수수료는 제공되는 역무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수수료와 특별과징(Special assessment)과의 차이는 특별과징이 1회한 또는 임시적으로 부과되는데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서비스의 급부기간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또한 수수료는 개인 그 자체에 부과되는데 특별과징은 집단 내지 계급의 일원으로써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특별과징은 언제나 부동산 특히 토지의 편익공여를 전제로 하는데 수수료에는 이러한 종류의 전제가 없다. 따라서 특별과징이란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자산의 특별한 개선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산소유자의 특별편익에 따라 부과되는 1회한의 지불”이라는 규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특별과징도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목적세 등과 같이 수익자 부담의 본래적인 의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수료는 조세와는 다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재정 수입의 획득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자력에 따라 공평하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행정서비스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그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서비스를 특정인이 이용하고 이용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무료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혜를 받은 특정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징수원인과 그 대상에 있어서 수수료는 조세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파관리 수수료는 전파관리의 혜택을 받은 특정집단 즉 전파이용자가 전파관리의 사업비용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2. 수수료의 기본 성격

수수료의 징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받는 특수 이익의 발생, 둘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주체의 특수 경비의 발생, 셋째, 부담분배의 공평은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것

第 3 章 전파관리 수수료제도의 현황

第 1 節 수수료의 의의

1. 수수료의 개념

수수료는 영어로 “Fess”, 독일어는 “Gebühren”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의 다른 정의를 하고 있다.

세리그만 (E.Seligman)은 “수수료란 공익을 위하지만 비용 지불자에게 가혹적인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수행하는 경상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지불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때 수수료는 사경제적 수입과 조세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사경제적 수입과 다른점은 공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부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와거너 (A.Wagner)는 수수료를 국가경제적 수입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의 제원으로서 공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 시키는 점에서 수수료도 조세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상 엄격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정의에 대하여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총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요금”이라고 한다. 이것은 행정주체가 개인에게 제공하여 준 공적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수료의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금 (Rate)과 가격 (Price)의 개념을 비교해 보자.

요금이란 경제재 중에서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화폐가치를 일컫는다. 이중에서 특히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하며 수수료는 공공요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생산주체의 경제재 중에서 물품 (Commodity)에 대하여 지급하는 화폐가치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개념이 다음과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혼함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개념이란 공공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며 또 그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요금 또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정리하고 보다 명확한 수수료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수료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용료, 특별과징등의 개념가 그 차이를 구분해 보자.

첫째, 수수료와 사용료가 특정한 이익에 상응하여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가치라는 점과 공공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인 공공요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수수료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라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사용료와 수수료는 제공되는 역무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수수료와 특별과징 (Special assessment)과의 차이는 특별과징이 1회한 또는 임시적으로 부과되는데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서비스가 급부기간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또한 수수료는 개인 그 자체에 부과되는데 특별과징은 집단 내지 계급의 일원으로써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특별과징은 언제나 부동산 특히 토지의 편익공여를 전제로 하는데 수수료에는 이러한 종류의 전제가 없다. 따라서 특별과징이란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자산의 특별한 개선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산소유자의 특별편익에 따라 부과되는 1회한의 지불”이라는 규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특별과징도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목적세 등과 같이 수익자 부담의 본래적인 의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수료는 조세와는 다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재정 수입의 획득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자력에 따라 공평하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행정서비스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그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서비스를 특정인이 이용하고 이용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무료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혜를 받은 특정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징수원인과 그 대상에 있어서 수수료는 조세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파관리 수수료는 전파관리의 혜택을 받은 특정집단 즉 전파이용자가 전파관리의 사업비용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2. 수수료의 기본 성격

수수료의 징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받는 특수 이익의 발생, 둘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주체의 특수 경비의 발생, 셋째, 부담분배의 공평은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것

은 바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로 볼때 수수료의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특정성의 원칙 : 수수료는 모든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수수료의 징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은 특정인에게만 징수한다.
- 용익성의 원칙 : 수수료는 특정한자가 자기의 이익 혹은 편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요청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무이거나 또는 그 사무가 주로 행정상의 필요성에서 생긴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 비용보상의 원칙 : 특정한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을 들게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당연히 그 만큼의 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리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 설명한 “특정성의 원칙”, “용익성의 원칙”, “비용보상의 원칙”의 세가지의 원칙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수수료로서 취급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에는 수수료로 부르는 것이 적당치 않는 것이다.

第 2 節 전과관리 수수료의 부과 타당성

현대사회에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비용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가격이나 요금에 의한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직접부담 및 과세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구별은 편익과 부담관계의 명확성에 의한 것으로서, 크게 나누면 과세(세부담)와 수익자부담(광의)이 된다. 행정서비스가 공공재 인지 아닌지 외부성의 기준과 그 서비스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가분성의 기준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한 뒤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수익자 부담

공고수입에는 무상적 수입인 조세와 유상적 수입인 판매가격수입 및 금융적 수입이 있다. 판매가격수입은 민간에게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그 수취자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비로소 수입이 된다.

이러한 경우 공공서비스를 수취한 특정인만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뜻에서 조세부담과 구별하여 수익자부담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공공수입은 부담계정의 증가가 따르는 공채수입과 금융자산의 감소가 따르는 대부금 회수 등의 금융적 수입을 제외하면 조세수입과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이루어 진다.

조세부담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 공공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일반자원)이다.

이에 비하여 수익자부담은 어떤 종류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특정의 수익자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분담금 때로는 불하가격등의 형태로 당해 서비스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2. 수익자 부담의 근거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편익은 사회전반에 동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그로인한 편익의 정도가 각 개인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개인이 향수하는 편익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편익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의 공평원칙에 합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세 체계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대응하는 과세를 기준으로 하고 또 편익의 정도에 따른 과세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은 광범위한 국민 각층에 그 소득과 관계없이 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근거는 이익설에 근거를 둔 응익원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3. 수익자 부담의 성질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모두가 공공재로서의 성질(집단 소비성, 비배제성, 결합공급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제적 성질을 포함한 준공공재 내지 혼합재가 많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의 편익이 국민의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그

서비스를 받는 개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행정서비스에 외부성이 있어서 그 외부성에 의해 어떤 자가 특별한 편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세에 의하여 지변하게 되면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시킨다.

수익자부담을 정당화하는 재정상의 근거는 첫째 효율, 둘째 공평, 셋째 수입이란 3가지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의 효율면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의 결정에 번거로운 정치적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가격기구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자동적으로 달성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둘째의 공평면에서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특별한 편익을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활동을 개인에게 허가하는 경우, 그 활동에서 해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적인 규제나 감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개인에게 특별한 편익을 주는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상 그 편익을 공공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고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이 정당화된다.

셋째의 수입면에서는 일반조세의 부담 수준이 높아서 부담감이 무거울 경우에는 행정서비스와 수익자의 편익관계가 명확하게 부담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다면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이상과 같이 재정학적 성질에서 본 수익자부담의 개념은 매우 넓어서 공공요금,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목적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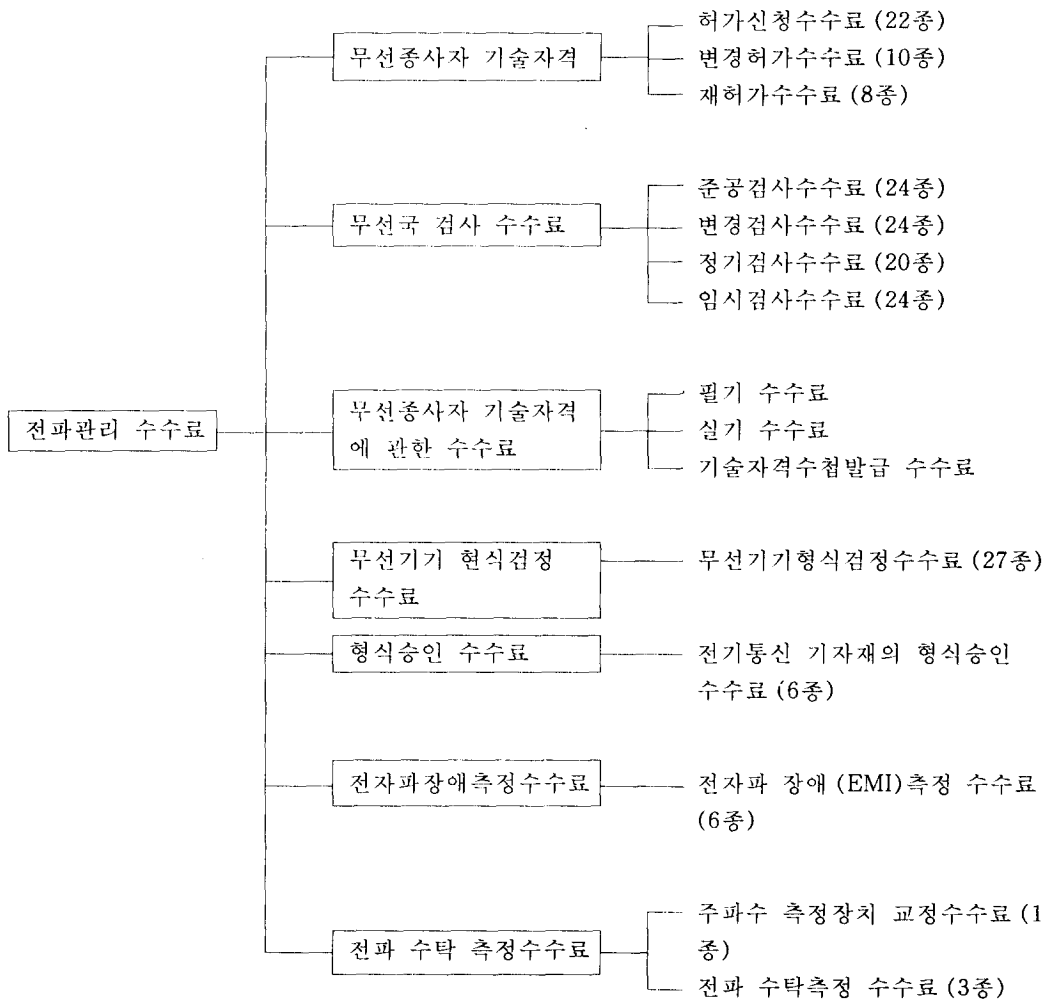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때에 공공요금, 수수료, 부담금, 목적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파관리는 전파자원의 관리 주체인 정부가 수행하는 전파관리 서비스중 일부가 특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전파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로서 “전파관리 수수료”란 명목으로 경제적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第 3 節 전파관리 수수료의 체계

1. 구 성

전파관리 수수료는 무선국 허가, 검사,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기술자격수첩 발급, 무선기기 형식검정,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EMT 측정 수수료, 전파수탁 측정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전파관리 수수료의 구성

○ 무선국 허가 수수료

무선국의 허가 수수료는 허가의 구분에 따라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수수료로 분류되고 있다. 각 허가 수수료는 무선국의 종별에 따라 1차 분류되고 2차적으로는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표 3-1>은 무선국의 종별 구분과 이에 따른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3-1> 무선국 허가 수수료 구성

무 선 국 의 종 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국 제외)과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국	50W 미만 50W 이상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한다)	1KW 미만 1KW 이상 10KW 미만 10KW 이상
텔레비전 방송국	1KW 미만 1KW 이상 10KW 미만 10KW 이상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50W 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고주파 이용설치	50W 미만 50W 이상
기타의 무선국	50W 미만 50W 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500W 미만 500W이상
	수신장치 (송신장치가 없는 국)

○ 무선국 검사 수수료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무선국의 검사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 변경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수수료로 구분되고 이를 무선국의 종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표 3-2>은 무선국의 검사 수수료 구성표이다.

<표 3-2> 무선국 검사 수수료 구성

무 선 국 의 종 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어선의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	12W 미만 12W 이상 50W 미만 50W 이상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	10W 미만 10W 이상 50W 미만 50W 이상
텔레비전 방송국	100W 미만 100W 이상 1KW 미만 1KW 이상 10KW 미만 10KW 이상
실험국과 아마츄어국	50W 미만 50W 이상 500W 미만 500W 이상 5KW 미만 5KW 이상
고주파 이용설치	100W 미만 100W 이상 1KW 미만 1KW 이상 10KW 미만 10KW 이상
기타의 무선국	5W 미만 5W 이상 50W 미만 50W 이상 500W 미만 500W 이상 5KW 미만 5KW 이상
	수신장치 (송신장치가 없는 국)

○ 무선종사자 기술자력에 관한 수수료

무선종사자 기술자력에 관한 수수료는 필기검정, 실기검정, 수수료, 기술자격수첩 발급 신청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는 형식검정, 형식승인 및 EMT 시험수수료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전파 수탁측정 수수료

전파 수탁측정 수수료는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과 전파 수탁측정 수수료로 구성되며 측정 구분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 부과

2. 효율 체계

수수료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면에서 볼때 수수료의 효율체계는 이용의 대가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며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평한 배분이 되는가를 결정해 주는 도구이다.

전파관리 수수료의 기능은 전파자원의 이용 기술개발 및 전파자원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재원의 확보로 전파관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전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관리 수수료는 상반되는 두가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합리적인 효율체계, 효율적인 수수료의 구조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파관리 수수료의 효율 체계는 전파관리 수수료의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선국 허가 수수료 40종, 무선국 검사 수수료 92종,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3종목, 무선기기 형식검정 27종,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6종, 전자파 장애측정 6종,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 1종, 전파 수탁측정 3종으로 총 178종의 효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를 서비스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무선국 허가 수수료 효율 체계

무선국 허가 수수료의 체계는 제1차로 무선국의 종별 구분에 기준을 두고 분류 설정한 다음 제2차로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에 따라 차등 효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3-3>은 무선국 허가 수수료 효율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 무선국 허가 수수료 요율 체계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 및 지정변경 신청수수료	재허가신청 수수료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제외)과 항공기국	50W 미만	9,400	8,300	8,300
	50W 이상	18,900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국	50W 미만	3,200	2,600	2,600
	50W 이상	8,400	4,600	4,60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 미만	3,200		
	50W 이상	8,400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한다)	1KW 미만	72,300		
	1KW 이상 10KW 미만	145,000	42,000	42,000
	10KW 이상	217,300		
텔레비전 방송국	1KW 미만	116,000		
	1KW 이상 10KW 미만	217,300	57,300	57,300
	10KW 이상	289,500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4,000		
	50W 이상 100W 미만	9,000	2,800	2,800
	100W 이상	13,000		
고주파 이용설치	50W 미만	3,200	2,600	
	50W 이상	8,400	4,600	
기타의 무선국	50W 미만	12,000		
	50W 이상 100W 미만	19,000		
	100W 이상 500W 미만	32,000	7,000	7,000
	500W 이상	40,000		
	수신장치 (송신장치가 없는 국)	12,000	3,000	3,000

○ 무선국 검사 수수료 요율 체계

무선국 검사 수수료 요율 체계는 검사의 구분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또한 무선국의 종별 분류와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별 차등 요율은 무선국 허가 수수료와 동일하다.

<표 3-4>은 무선국 검사 수수료의 요율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무선국 검사 수수료 요율 체계

(단위 : 원)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 수 료	변경검사 수 수 료	정기검사 수 수 료	임시검사 수 수 료
어선의 선박국 (총톤 수 500톤미만의 것)	12W 미만	14,200	9,100	9,000	9,100
	12W 이상 50W 미만	22,000	14,000	14,000	14,000
	50 W이상	34,000	22,000	21,400	22,000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	10KW 미만	416,000	194,000	326,000	194,000
	12KW 이상 50KW 미만	505,000	236,000	396,000	236,000
	50KW 이상	653,000	305,000	512,200	305,000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358,000	137,000	272,000	137,000
	100W 이상 1KW 미만	529,000	199,600	402,300	199,600
	1KW 이상 10KW 미만	700,000	268,000	533,000	268,000
	10KW 이상	842,000	322,200	640,300	322,200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8,100	7,400	7,000	7,400
	50W 이상 500W 미만	15,200	11,200	10,000	11,200
	500W 이상 5KW 미만	25,400	18,000	16,000	18,000
	5KW 이상	33,000	22,200	20,000	22,200
고주파이용설비	100W 미만	9,200	7,000		7,000
	100W 이상 1KW 미만	14,000	10,000		10,000
	1KW 이상 10KW 미만	22,200	16,000		16,000
	10KW 이상	28,000	20,000		20,000
기타의 무선국	5W 미만	24,400	18,200	19,000	18,200
	5W 이상 50W 미만	66,300	49,300	50,400	49,300
	50W 이상 500W 미만	111,000	82,300	84,000	82,300
	500W 이상 5KW미만	146,100	109,000	111,000	109,000
	5KW 이상	174,000	129,300	132,200	129,300
	수신장치 (송신장치 가 없는 국)	8,200	7,000	7,000	7,000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기술자격검정 (필기, 실기수수료)와 기술자격수첩 발급 수수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필기검정 수수료는 1,700원, 실기검정 수수료는 2,000원, 기술자격수첩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요율 체계

무선기기의 형식검정에 관한 수수료는 형식검정 대상기기별로 요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검정 27종, 형식승인 6종, EMI시험 6종, 주파수 측정장치교정 1종, 전파 수탁측정 3종으로 모두 43종의 요율로 짜여져 있다.

<표 3-5>은 기기 종별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이다.

<표 3-5>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검정기명	장치별	수수료
-주파수 측정장치		178,000
-경보 자동 수신기		260,000
-구명전용 휴대 무선 전신기기		233,000
-무선 방위 측정기		180,000
-의무 항공기국에서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231,000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설비		173,000
-선택 호출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송수신장치	159,000
	송신장치	111,000
	수신장치	115,000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송수신장치	154,000
	송신장치	92,000
	수신장치	99,000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 장치의 기기 (이동공중 무선전화장치 및 주파수 공용 무선전화 통신용 기기 포함)	송수신장치	128,000
	송신장치	74,000
	수신장치	78,000
-라디오 부이의 기기		145,000
-27MHz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단측파대	100,000
	양측파대	68,000
	휴대용	56,000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기		74,000
-경보자동 전화장치		38,000
-의료용 설비의 기기		79,000
-기상원조국 의용에 속하는 라디오 존데 및 라디오 로봇기기		53,000
-제1종 레이다		224,000
-제2종 레이다		211,000
-제3종레이다 및 제4종레이다		198,000
-레이다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 레이다 푸러딩 장치		134,000

<표 3-6>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기	자	재	명	수	수	료
			자동식 교환기류			250,000
			수동식 교환기류			175,000
			전송 설비류			125,000
			단말 장치류			125,000
			선로설비류 및 단말장치의 부속 설비류			75,000
			전원설비류			75,000

<표 3-7> 전자파장애 (EMI)측정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기	자	재	명	수	수	료
			모			218,000
			폰			222,000
			구 내 교 환 기			223,000
			신용카드 조회기			220,000
			텔 리 텍 스			220,000
			데이터 다중화기			218,000

<표 3-8> 교정 위탁 신청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기	자	재	명	수	수	료
			주파수 측정장치			16,000

<표 3-9> 전파 수탁측정 수수료

(단위 : 원)

수	수	료	명	수	수	료
			주파수 측정			250
			점유주파수대역폭 측정			2,400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측정			2,800

第4節 전파관리 수수료의 세입 현황

1. 전파관리 수수료 세입의 총체적 규모

국가의 일반적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수지를 경리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이며,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의 주종으로 하고 국가의 일반통치관계에 따른 제경비를 세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기업형태로 운영할 경우 국가가 특정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관련 비용을 당해 역무의 수입으로 직접 충당할 경우,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관리 할 경우,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경우, 일반 회계와 구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 자금특별회계, 사업특별회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전파관리비는 기업특별회계의 통신사업회계에 속하고 있다.

전파관리비의 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전파관리 수수료 세입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유일한 자주재원으로서 세입 자체가 전파관리에 직접 기여하는 재원이다.

전파관리 수수료 세입의 총체적 규모를 살펴보면 <표 3-10>과 같다.

<표 3-10> 전파관리 수수료의 세입대 세출 대비표

(단위 천원)

구 분	대 비	세 입	세 출	비 고
• 전파관리비		3,180,550	9,323,121	'88년 결산기준
—무선국허가수수료		789,581	1,398,468	
—무선국검사수수료		2,291,721	7,747,51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관계수수료		34,778	121,201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65,570	55,939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1988년의 경우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결산액 9,323,121,000원

중 수수료 세입은 3,180,650,000원으로 전체지출 규모의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2. 전파관리 수수료 세입 추이

전파관리 수수료의 세입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통하여 전파관리 수수료의 증대 필요성이 분명하게 된다. 왜냐하면 <표 3-11>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선국의 증가추세에 따른 전파관리비의 지출과 수입을 비교하므로서 재정 상태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1> 전파관리 수수료 년도별 추이

(단위 천원)

구분 년도별	무 선 국 수	세 출 액	세 입 액	실 비 보 상 율	비 고
1982년	30,723	6,095,142	1,602,445	26.3%	
1983년	36,240	6,703,115	2,631,275	39.3%	
1984년	59,001	7,161,434	2,581,289	36 %	
1985년	71,791	7,491,760	2,536,027	33.9%	
1986년	99,244	7,365,662	2,987,599	40.6%	
1987년	121,598	8,146,351	3,248,359	40 %	
1988년	129,650	9,323,121	3,180,650	34 %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무선국 신장율에 비하여 전파관리 수수료의 세입 추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파관리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 추세는 특정이익을 위한 성격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바로서 그에 부합되는 반대급부로서의 전파관리 수수료의 증대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선국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신장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그 수수료 요율 수준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장기간 미조정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전파관리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한 전파관리 수수료 수입의 증대방안은 일단 수수료 요율 수준의 적정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전파관리 수수료별 세입현황

전파관리 수수료 수입의 총규모를 수수료의 종류와 각 체신청별로 나누어서 살펴 본 것이 다음 <표 3-12>이다.

<표 3-12> 전파관리 수수료의 분류별 수입 비중

(단위: 원)

수수료종별 지역별	허가수수료	검 사 수 수 료	기술자격 검 정	형식검정 관 수 수 료	합 계
서울 체신청	367,036	654,780	24,901		1,046,717
부산 체신청	216,307	376,061	2,651		595,019
전남 체신청	46,600	295,690	1,360		343,650
강원 체신청	23,864	216,316	823		241,003
충청 체신청	68,500	301,500	1,742		371,742
경북 체신청	43,567	247,645	2,015		293,227
전북 체신청	15,540	125,380	989		141,909
제주 우체국	8,167	74,349	297		82,813
전파연구소	.	.	.	80,681	80,681
한국무선종 사자협회		2,068,353			2,068,353
합 계	789,581	4,360,074	34,778	80,681	5,265,114

* '88년 결산 기준

<표 3-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파관리 수수료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수입 수수료 전체의 83%로서 가장 높은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선국 허가 관계 수수료는 15%의 비중을 점하고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의 0.6%, 무선기기 형식검정 관계 수수료는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때 전파관리 수수료 수입의 총체적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에 비하여 저조하고 그 신장율도 무선국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전파관리 수수료의 증대를 위한 전파관리 수수료의 효율 조정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第 4 章 전파관리 수수료 체계 분석

第 1 節 전파관리 수수료 변천과정

전파관리 수수료는 1961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전파관리법에 근거하여 1962년 3월 12일 제정공포된 전파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으며, 1968년에는 무선국 허가 수수료 440%, 무선국 검사 수수료 330%,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350%의 요율 조정이 있었으며, 1972년에는 무선국 검사 수수료 150%,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290%의 요율 조정이 있었으나 무선국허가 수수료에 대한 요율 조정은 없었다. 그리고 1975년에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요율이 500% 하향조정되기도 하였다.

1982년 전파관리 수수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무선국 허가과 무선국 검사수수가 큰 폭으로 조정되었다. 실로 14년(무선국 검사는 10년)만의 조정이었다. 그러나 수수료의 기본적인 체계나 수수료의 구조에는 28년동안 큰 변화가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1. 조정내용

<표 4-1>은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체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에 관한 수수료를 1982년 4월 15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 비교한 것이다.

<표 4-1> 무선국 허가 수수료 요율 조정 비교

(단위 : 원)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1982년 4월 15일 이전 수수료			1982년 4월 15일 이후 수수료		
		허가 신청	변경 허가	재허가	허가 신청	변경 허가	재허가
선박국 (총톤수 500 톤미만 어선의 선박 국을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50W미만 50W이상	1,000 2,200	400	200	9,400 18,900	8,300	8,300
총톤수 500톤미만 어선의 선박국	50W미만 50W이상	700 1,800	200	100	3,200 8,400	2,600 4,600	2,600 4,60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및항공 기국	50W미만 50W이상	·	·	·	3,200 8,400	·	·
방송국 (TV방송국을 제외한다)	1KW미만 1KW이상 10KW미만 10KW이상	5,500 11,000 16,500	3,000	1,500	72,300 145,000 217,300	42,000	42,000
TV 방송국	1KW미만 1KW이상 10KW미만 10KW이상	8,800 16,500 22,000	4,000	2,000	116,000 217,300 289,500	57,300	57,300
실험국과 아마추 어국	50W미만 50W이상 100W미만 100W이상	700 1,500 ·	200	200	4,000 9,000 13,000	28,000	28,000
고주파이용설비	50W미만 50W이상	·	·	·	3,200 8,400	2,600 4,600	·
기타 무선국	50W미만 50W이상 100W미만 100W이상 500W미만 500W이상	1,100 1,800 3,000 3,800	600	300	12,000 19,000 32,000 40,000	7,000	7,000
수신장치 (송신장치 가 없는 것)		1,100	300	200	12,000	3,000	3,000

<표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 수수료의 구조는 1982년 4월 15일이 전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으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사항과 고주파 이용설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고 있다. 또한 아마추어 및 실험국의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보다 더

세분화하여 2가지로 분류하였던 것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무선국 허가 수수료의 요율 조정은 신규 허가인 경우 4.5배 ~ 13.1배가 인상 조정되었고, 변경허가의 경우 11.7 ~ 23.3배, 재허가의 경우 23.3배 ~ 41.5배에 이르는 큰폭의 요율이 인상 조정되었다. 이는 14년동안이나 방치된채 미조정 상태에 있었다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표 4-2>은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1982년 4월 15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것이다.

<표 4-2> 무선국 검사 수수료 요율조정 비교

(단위 : 원)

무선국의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1982년 4월 15일 이전 수수료			1982년 4월 15일 이후 수수료			
		준공	변경	정기	준공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임시검사 수수료
어선의 선박국 (총톤수 500톤미만의 것)	12W미만	2,500	900	1,800	14,200	9,100	9,000	9,100
	12W이상 50W미만	3,800	1,400	2,700	22,000	14,000	14,000	14,000
	5KW이상	6,000	2,100	4,200	34,000	22,000	21,400	22,000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한다)	10W미만	70,000	25,000	49,000	416,000	194,000	326,000	194,000
	10W이상 50W미만	85,000	30,000	60,000	505,000	236,000	396,000	236,000
	50W이상	110,000	39,000	77,000	653,000	305,000	512,200	305,000
텔레비전 방송국	10W미만	48,000	17,000	34,000	358,000	137,000	272,000	137,000
	100W이상 500W미만	71,000	25,000	50,000	529,000	199,600	402,300	199,600
	500W이상 5KW미만	94,000	33,000	66,000	700,000	268,000	533,000	268,000
	10W이상	113,000	40,000	79,000	842,000	322,200	640,300	322,200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미만	1,600	600	1,200	8,100	7,400	7,000	7,400
	50W이상 500W미만	3,000	1,100	2,100	15,200	11,200	10,000	11,200
	500W이상 5KW미만	5,000	1,800	3,500	25,400	18,000	16,000	18,000
	5KW이상	6,500	2,300	4,600	33,000	22,200	20,000	22,200
고주파이용설비	100W미만				9,200	7,000		7,000
	100W이상 1KW미만				14,000	10,000		10,000
	1KW이상 10KW미만				22,200	16,000		16,000
	10KW이상				28,000	20,000		20,000
기타의 무선국	5W미만	3,100	1,100	2,200	24,400	18,200	19,000	18,200
	5W이상 50W미만	8,400	3,000	5,900	66,300	49,300	50,400	49,300
	50W이상 500W미만	14,000	4,900	9,800	111,000	82,000	84,000	82,300
	500W이상 5KW이상	18,500	6,500	13,000	146,000	109,000	111,000	109,000
	5KW미만	22,000	7,700	15,400	174,000	129,000	132,000	129,300
	수신장치 (송신장치가 없는국)	1,400	500	1,000	8,200	7,000	7,000	7,000

무선국 검사 수수료의 요율 조정은 무선국 허가 수수료 요율 조정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72년의 전파관리 수수료 인상조정이 검사 수수

료와 무선 종사자가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준공검사 수수료가 5배~8배, 변경검사 수수료, 7배~16.7배, 정기검사 수수료는 4.3배~8배로 조정되었다.

第 2 節 전파관리 수수료의 효율 분석

1. 효율분석 절차

전파관리 수수료의 효율 분석은 현재의 수수료 효율이 그 수준에 타당한 것인가, 또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보고자 한다.

수수료의 효율 분석은 객관적 기초로써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분석하여 1건당 소요되는 총경비를 산출 그 원가비용을 현재의 수수료 효율과 비교 원가의 총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보상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런데 전파관리 수수료 전부를 효율 분석한다는 것은 시간과 지면상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되어 종목별로 조사대상을 선정 개별분석함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조사대상 종목은 다음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 처리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
- 원가계산을 위한 단순명확성이 클것

<표 4-3> 원가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종목

국종별 송신기규모 수수료별	선박국과 항공국	이 선 선 박 국	방 송 국	아마츄어국	기 타 국 (간 이)	기 타 국 (기 지 국, 고 정 국)
무선국 허가 수수료(신규)	50W미만	50W미만	1KW이상 10KW미만	50W미만	50W미만	50W미만
무선국 검사 수수료(정기)	5W이상 50W미만	12W이상 50W미만	10KW미만	50W이상 500W미만	5W미만	50W이상 500W미만
무선종사자기 술자격검정	필기 및 실기					
무선종사자기 술 자격수첩 신청 수수료	자격수첩 신청					
무선기기 형 식 검정 수 료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송수신장치					
전기통신자재 의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	전송 설비류					
전자파 장애 측정 수수료	구내 교환기					

2. 서비스 원가와 실비보상율

가. 무선국 허가

- 1) 어선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허가신청 수수료

<표 4-4> 어선 선박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어선 선박국 허가신청 수수료 (B) 담당부서 : 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3,200원 (5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375분 (a) 허가처리 민원접수 : 15분 (b) 업무과 허가사항 심의 : 60분 (c) 통신보안 심의 : 60분 (d) 기술과 기술사항 심의 : 120분 (e) 주파수 할당 : 60분 (f) 가허가 발급 : 30분 (g) 무선국 허가장 발급 : 3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25,936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 5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5%) : 1,303원 (8) 총계 : 27,354원
실비보상율	$(D) \div (8) = 11.7\%$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W미만인 어선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허가신청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표 4-4>에서 보는 바와같이 27,354원으로 현요율 3,200원은 실비의 11.7%만을 보상하고 있다. 이는 어선의 소득상태를 고려한 설정이라고 생각되나 실비의 11.7%는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본다.

2) 선박국(어선제외) 허가신청 수수료

<표 4-5> 선박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선박국(어선제외)허가신청 수수료 (B) 담당부서 : 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9,400원 (5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735분 (a) 허가신청 민원접수처리 : 15분 (b) 업무과 허가사항 심의 : 240분 (c) 통신보안 심의 : 60분 (d) 기술부문 심의 : 240분 (e) 주파수 할당 : 120분 (f) 가허가 발급 : 30분 (g) 무선국 허가장 발급 : 3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53,370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 5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5%) : 2,674원 (8) 총계 : 56,159원
실비보상율	$(D) \div (8) = 16.7\%$ 원

현 효율이 9,400원인 선박국의 허가신청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56,159원으로 실비보상율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7%이다. 어선선박국보다는 5.6%가 높은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저렴하여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3) 방송국 (T.V방송국 제외) 허가신청 수수료

<표 4-6> 방송국 (T.V방송국 제외)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방송국 (T.V 방송국 제외) 허가신청 수수료 (B) 담당부서 : 전파관리국 방송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145,000원 (1KW이상 10K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4057분 (a) 허가신청 민원접수 : 30분 (b) 업무과 심의사항 : 480분 (c) 무선국통신보안 심의 : 120분 (d) 기술과 기술사항 심의 : 480분 (e) 주파수 할당 : 2,767분 (f) 심사 : 480분 (g) 문화공보부와의 합의 : 120분 (h) 가허가 및 방송국 허가 : 12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371,308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30,207원 (4) 인쇄, 제본 : 5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5%) : 20,082원 (8) 총계 : 421,712원
실비보상율	(D) ÷ (8) = 134.38%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1KW이상 10KW미만의 방송국 (T.V방송국제외)의 허가신청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421,712원으로 현 요율 145,000원은 실비의 34.38%만을 보상하고 있다.

전파의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방송국의 수수료는 실비원가를 상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실비보상율은 34.5%에 지나지 않고 있다.

4) 아마츄어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표 4-7> 아마츄어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아마츄어 무선국허가 신청수수료 (B) 담당부서 : 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4,000원 (5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375분 (a) 허가처리 민원업무 접수처리 : 15분 (b) 업무과 심의사항 : 60분 (c) 통신보안 심의 : 60분 (d) 기술과 기술부문 심의 : 120분 (e) 주파수 할당 : 60분 (f) 가허가 : 30분 (g) 무선국 허가장 발급 : 3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26,822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제본 : 5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5%) : 1,347원 (8) 총계 : 28,284원
실비보상율	$(D) \div (8) = 14.9\%$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는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에 따라 50W미만, 50W이상 100W미만 및 100W이상으로 구분 차등부과하고 있다.

이중 53%이상을 정하고 있는 50W미만에 대한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28,284원이다. 그에 비하여 현행 요율은 4,000원으로 실비 보상율은 <표 4-7>의 예와 같이 14.9%에 그치고 있다.

5) 기타의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나. 간이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표 4-8> 간이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기타의 무선국 (간이무선국) 허가 신청 수수료 (B) 담당부서 : 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12,000원 (5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4시간 40분 (a) 허가신청 민원접수 : 10분 (b) 업무과 심의사항 : 60분 (c) 통신보안 심의 : 30분 (d) 기술과 기술부문 심의 : 60분 (e) 주파수 할당 : 60분 (f) 가허가 : 30분 (g) 무선국 허가장 발급 : 3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20,774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 5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5%) : 1,043원 (8) 총계 : 21,902원
실비보상율	$(D) \div (8) = 54.8\%$

기타의 무선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간이무선국은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

모가 12W미만인 무선국이다. 그중 2W이하의 무선국이 6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50W미만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간이무선국 전체가 된다.

<표 4-8>과 같이 간이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21,902으로 현행 수수료 요율 12,000원은 실비의 54.8%를 보상하고 있다.

간이무선국은 육상이동국과 더불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무선국으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다. 고정국 허가신청 수수료

<표 4-9> 선박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기타의 무선국 (고정국) 허가신청 수수료 (B) 담당부서: 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C) 근거법규: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32,000원 (50W이상 10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826분 (a) 허가신청 민원접수처리: 15분 (b) 업무과 업무 심의 사항: 240분 (c) 통신보안 심의: 60분 (d) 기술과 기술 심의: 120분 (e) 주파수 할당: 331분 (f) 가허가: 30분 (g) 무선국 허가장 발급: 3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63,630원 (2) 감가상각비: 60원 (3) 임금, 여비: - (4) 인쇄비: 50원 (5) 광열비: 3원 (6) 소모품비: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5%): 3,187원 (8) 총계: 66,932원
실비보상율	$(D) \div (8) = 47.8\%$

기타의 무선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고정국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W ~ 100W미만에서 운용하는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산정된 원가는 <표 4-9>와 같이 66,932원으로 현행 요율은 실비보상율 47.8%인 32,000원이다.

<표 4-10>에서와 같이 원가분석에 의한 허가신청 수수료의 실비보상율은 전반적으로 50%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수수료의 요율이 낮게 설정된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파관리 수수료의 장기 미조정 상태에 비하여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표 4-10>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실비보상율

(단위 : 원)

무 선 국 종 별	수수료의 원가	현행 수수료	실비 보상율
어선 선박국 (50W미만)	27,354	3,200	11.7%
선박국 (어선제외) (50W미만)	56,159	9,400	16.7%
방송국 (T.V방송국 제외) (1KW이상 10KW미만)	421,712	145,000	34.4%
아마추어 무선국 (50W미만)	28,284	4,000	14.9%
간이무선국 (50W미만)	21,902	12,000	54.8%
고정국 (50W이상 100W미만)	66,932	32,000	47.8%

라. 무선국 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1) 어선의 선박국 검사 수수료

<표 4-11> 어선 선박국 정기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어선의 선박국 정기검사 수수료 (B) 담당부서 :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14,000원 (공중선전력 12W이상 5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7시간 (a) 검사계획 수립 : 30분 (b) 검사 : 3시간 (c)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 2시간 (d) 검사 보고서 작성 : 30분 (e)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27,163원 (2) 감가상각비 : 1,043원 (3) 임금, 여비 : 3,500원 (4) 인쇄, 제본 : 13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5%) : 6,368원 (8) 총계 : 38,209원
실비보상율	$(D) \div (8) = 36.6\%$

어선의 선박국 (총톤수 500톤미만의 것)은 50W미만의 무선장치를 갖춘것이 어선 전체 무선국의 80.1%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면 38,209원으로 현행요율 14,000원은 <표 4-11> 에서와 같이 36.6%의 실비 보상에 그치고 있다.

무선국 검사는 경제적, 산업활동에 매우 탄력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요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난이도에 따라 고율의 요율을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처럼 실비보상율이 낮은 것은 소득계층별에 대한 고려로 예상되지만 실비보상율이 원가의 40%에도 못미치는 것은 요율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선박국 (어선제외)검사 수수료

<표 4-12> 선박국 (어선제외)정기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기타의 무선국 (선박국)정기검사 수수료 (B) 담당부서 :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50,400원 (5W이상 5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11시간 30분 (a) 계획 수립 : 30분 (b) 검사 : 6시간 (c)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 3시간 (d) 검사 보고서 작성 : 1시간 (e)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45,032원 (2) 감가상각비 : 1,043원 (3) 임금, 여비 : 3,500원 (4) 인쇄, 제본 : 13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20%) : 9,942원 (8) 총계 : 59,658원
실비보상율	$(D) \div (8) = 84.5\%$

기타의 무선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무선국의 종류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간이 무선국에서 부터 해안국, 고정국, 기지국, 육상국, 육상이동국, 휴대국, 표지국, 측위국, 비상국, 선박국 (어선의 선박국으로 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은 제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요율산정에 따르는 어려움도 크다.

여기서 원가산출은 68.7%를 상회하고 있는 50W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선박국을 기준하였다. 산출된 원가는 <표 4-12>에서와 같이 59,658원으로 현행요율 50,400원이 84.5%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해당 수수료가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비보상의 정도가 타무선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되고 있으나 실비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방송국 (T.V 방송국 제외) 검사 수수료

<표 4-13> 방송국 정기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방송국 (T.V 방송국제외) 정기검사 수수료 (B) 담당부서 : 체신청 전파국 기술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2조 (D) 현요율 : 326,000원 (10K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59시간 30분 (a) 계획 수립 : 30분 (b) 검사 : 48시간 (2인, 3일) (c)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 8시간 (2인 4시간) (d) 검사 보고서 작성 : 2시간 (e)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279,690원 (2) 감가상각비 : 929원 (3) 임금, 여비 : 104,000원 (4) 인쇄, 제본 : 13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20%) : 76,951원 (8) 총계 : 461,705원
실비보상율	$(D) \div (8) = 70.6\%$

방송국 (T.V 방송국은 제외 한다)의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원가는 <표 4-13>와 같이 461,705원으로 현요율 326,000원은 70.6%의 실비 보상율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국은 타 어느 무선국보다도 경제적 산업활동에 매우 탄력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요로 그 사무의 전문성, 기술성 난이도 기준으로 할때 고율의 요율책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4) 아마츄어 무선국 검사 수수료

<표 4-14> 아마츄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아마츄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B) 담당부서 :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10,000원 (50W이상 50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6시간 (a) 계획 수립 : 30분 (b) 검사 : 2시간 (c)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 2시간 (d) 검사 보고서 작성 : 30분 (e)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23,191원 (2) 감가상각비 : 1,043원 (3) 임금, 여비 : 3,500원 (4) 인쇄, 제본 : 13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20%) : 5,574원 (8) 총계 : 33,443원
실비보상율	$(D) \div (8) = 29.9$

아마츄어 무선국의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된 원가는 <표 4-14>에서와 같이 33,443원으로 현행요율 10,000원은 실비의 29.9%을 보상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효율책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요율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실비보상 정도의 요율 조정이 요구된다.

5) 기타의 무선국 검사 수수료

가) 간이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표 4-15> 간이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기타의 무선국(간이무선국)정기검사 수수료 (B) 담당부서:한국무선종사자 협회 (C) 근거법규: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19,000원 (5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5시간 (a) 계획 수립:30분 (b) 검사:1시간 (c)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2시간 (d) 검사 보고서 작성:30분 (e) 기타 부대업무: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19,220원 (2) 감가상각비:1,043원 (3) 임금, 여비:3,500원 (4) 인쇄, 제본:130원 (5) 광열비:3원 (6) 소모품비: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20%):4,780원 (8) 총계:28.678원
실비보상율	$(D) \div (8) = 66.3\%$

기타의 무선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전체의 98.4%가 5W 미만(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이다.

이에 기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의 원가를 산출 실비보상율을 보면 <표 4-15>와 같다.

나) 고정국 정기검사 수수료

<표 4-16> 고정국 정기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기타의 무선국 (고정국) 정기검사 수수료 (B) 담당부서 :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 (D) 현요율 : 84,000원 (고정국 50W이상 500W미만)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11시간 30분 (a) 계획 수립 : 30분 (b) 검사출장 소요시간 : 5시간 (c) 검사 : 4시간 (d) 검사 보고서 작성 : 1시간 (e)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53,832원 (2) 감가상각비 : 1,043원 (3) 임금, 여비 : 28,000원 (4) 인쇄, 제본 : 130원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비 (총경비의 20%) : 16,602원 (8) 총계 : 99,612원
실비보상율	$(D) \div (8) = 84.3\%$

기타의 무선국으로 분류된 고정국은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500W이상의 출력을 가진 무선국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50W이상 500W미만의 무선국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산출하였다.

고정국 정기검사 수수료는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가비율이 99,612원으로 나타나 실비의 84.3%를 보상하고 있다.

고정국에 대한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소득 계층별에 대한 고려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실비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표 4-17>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의 실비보상율

(단위 : 원)

무 선 국 종 별	수수료의 원가	현행 수수료율	실비 보상율
어선 선박국 (12W이상 50W미만)	38,209	14,000	36.6%
선박국 (어선 제외) (5W이상 50W미만)	59,658	50,400	84.5%
방송국 (T.V방송국 제외) (10KW미만)	461,705	326,000	70.6%
아마추어 무선국 (50W이상 500W미만)	33,443	10,000	29.9%
기타의 무선국 (간이무선국) (5W미만)	28,678	19,000	66.3%
기타의 무선국 (고정국) (50W이상 100W미만)	99,612	84,000	84.3%

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원가분석

(1) 체 신 청

<표 4-18>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무선종사자 자격 검정 수수료 (B) 담당부서 : 각 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5조 (D) 현요율 : 1,700원 (실기 검정 2,0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13분 (a) 계획 수립 (체신부 각 체신청) : 1.3분 (b) 접수 (각 체신청) : 1.2분 (c) 시험문제 출제, 선정, 심의, 편집 : 0.7분 (d) 시험장 임대 : 0.2분 (e) 시험문제 인쇄 : 0.3분 (f) 검정문제 교부 출장 : 0.1분 (g) 집계정리 : 9.2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931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1,574원 (4) 인쇄, 제본 : 176원 (5) 임대 : 88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경비 (총경비의 5%) : 142원 (8) 총계 : 2,973원
실비보상율	(D) ÷ (8) = 62%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전파 관리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후자에 관하여만 논하기로 한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체신청의 경우 <표 4-18>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가실비가 2,973원으로 나타나 실비의 62%를 보상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격검정 수수료는 타 수수료에 비하여 개인의 편익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비전액 보상의 수준에서 요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2)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표 4-19>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원가분석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B) 담당부서 :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5조 (D) 현요율 : 2,0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53분 (a) 연간계획 수립 (본부) : 53분 (b) 합격자명단 및 실적관리 (본부) : 0.9분 (c) 식지류 인쇄 (본부) : 0.3분 (d) 교육 및 검정시행 : 39분 (e) 접수 및 합격대장 작성정리 : 1125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3,122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2,131원 (4) 인쇄, 제본 : 41원 (5) 임대료 : 450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경비 (총경비의 5%) : 290원 (8) 총계 : 6,096원
실비보상율	$(D) \div (8) = 33\%$

한국 무선종사자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및 무선전화 병), 특수급 무선기사(레이다 을)에 대한 자격검정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표 4-19>에서와 같이 6,096원으로 현요율 2,000원은 33%의 실비보상에 그치고 있다.

한국 무선종사자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검정의 실비보상이 체신청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실비보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무선종사자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자격 검정을 실기검정으로 한해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과 매일 정기적으로 2회이상의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에 기인한다.

라)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수수료 원가분석

<표 4-20>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수수료 (B) 담당부서 :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서울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C) 근거법규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205조 (D) 현요율 : 1,0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73.8분	
	협 회	체 신 청
	(a) 신청서배부 및 접수 : 10분 (b) 내역서 작성 송부 : 15분 (c) 합격자명단 대조심사 : 10분 (d) 등록사항 통보서작성 : 5분 (e) 자격 취득자 등록부작성 : 5분 (f) 자격수첩 작성 : 10분 (g) 발송봉투 작성 : 2분 (h) 서울체신청송부 : 3분 (i) 월말실적 : 3분 (j) 인적사항 보안 및 반송 수첩관리 : 2분 (k) 자격수첩 관리 : 0.5분	접 수 : 0.3분 대조확인 : 5분 발 송 : 3분
수수료의 원가분석 (1건당 비용)	협 회	체 신 청
	(1) 인건비 : 3,252원 (2) 감가상각비 : 60원 (3) 임금, 여비 : 39원 (4) 인쇄, 제본 : - (5) 광열비 : 3원 (6) 소모품비 : 2원 (7) 기타부대경비 (총경비의 5%) : 210원 (8) 총계 : 4,405원	473원 365원
실비보상율	(D) ÷ (8) = 84.5%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수첩 발급은 무선종사자 협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서울체신청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발급하고 있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표 4-20>에서와 같이 4,405원으로 현요율 1,000원은 22.7%의 실비보상에 그치고 있다.

기술자격 수첩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수수료이므로 실비보상 수준에 따르는 요율책정이 바람직하다.

마)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원가분석

(1)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송수신 장치

<표 4-21>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장치)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송수신 장치) (B) 담당부서 : 전파연구소 (C) 근거법규 : 무선기기 형식검정 규칙 제19조 (D) 현요율 : 128,0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2,788분 (a) 접수 : 40분 (b) 측정시험 : 2,568 (2인 * 1,284분) (c) 보고서 작성 : 120분 (d) 기타 부대임무 : 6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190,572원 (2) 감가상각비 : 24,370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제본 : - (5) 광열비 : 570원 (6) 소모품비 : - (7) 기타부대경비 (총경비의 20%) : 43,102원 (8) 총계 : 258,614
실비보상율	$(D) \div (8) = 50\%$

(2) 형식승인 수수료 원가분석 (전송설비류)

<표 4-22>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전송설비류)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형식승인 (전송설비류) (B) 담당부서 : 전파연구소 (C) 근거법규 : 체신부령 제757조 (84.9.1) (D) 현요율 : 125,0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a) 접 수 : 40분 (b) 서류검토 : 16시간 (c) 형식승인 심의 : 2시간 (d) 보고서 작성 및 결재 : 6시간 (e) 형식승인 : 30분 (f) 기타 부대업무 : 60분 (g) 사후관리 : 8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165,559원 (2) 감가상각비 : - (3) 임금, 여비 : - (4) 인쇄, 제본 : 130원 (5) 소모품비 : 100원 (6) 기타부대경비 (전체의 20%) : 33,157원 (7) 총계 : 198,946원
실비보상율	$(D) \div (7) = 63\%$

(3) EMI (전자파장애) 측정 수수료 원가분석

<표 4-23> 전자파장애 측정 (구내교환기)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EMI (전자파장애)측정 (구내교환기) (B) 담당부서 : 전파연구소 (C) 근거법규 : 통신 34433-8449 (87.9.30) (D) 현요율 : 223,0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950분 (a) 접 수 : 40분 (b) 측정시험 : 790분 (c) 보고서 작성 : 1시간 (d)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67,128원 (2) 감가상각비 : 166,583원 (3) 광열비 (소모전력비) : 1,309원 (4) 기타부대비 (전체 20%) : 47,004원 (5) 총계 : 282,024원
실비보상율	$(D) \div (5) = 79.1\%$

(4)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위탁 수수료 원가분석

<표 4-24>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위탁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 (B) 담당부서 : 전파연구소 (C) 근거법규 : 전파 측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 (D) 현요율 : 16,0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a) 접 수 : 1시간 (b) 측정시험 : 10시간 (c) 보고서 작성 : 1시간 (d)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38,025원 (2) 감가상각비 : 14,716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제본 : - (5) 광열비 (전기료) : 7,835원 (6) 소모품비 : - (7) 기타 부대비 (총경비의 20%) : 12,115원 (8) 총 계 : 72,691원
실비보상율	$(D) \div (8) = 22\%$

(5) 전파 수탁 측정 수수료 원가분석

<표 4-25> 전파 수탁 측정 수수료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전파 수탁 측정 (B) 담당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C) 근거법규 : 전파 관리법 제24조 (D) 현 요 율 : • 주파수 측정 : 250원 • 점유주파수대역폭 : 2,400원 •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 2,800원 (E)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a) 접 수 : 30분 (b) 측정시험 : 2시간 (주파수 측정 : 1시간) (c) 보고서 작성 : 1시간 (d) 기타 부대업무 : 30분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 건 비 : • 점유주파수대역폭,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 24,954원 • 주파수 측정 : 16,754원 (2) 감가상각비 : • 점유주파수대역폭,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 1,940원 • 주파수 측정 : 1,540원 (3) 광열비 (전기료) : 494원 (4) 기타 부대비 (총경비의 20%) • 점유주파수대역폭,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 5,478원 • 주파수 측정 : 3,758원 (5) 총 계 : • 점유주파수대역폭,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 32,866원 • 주파수 측정 : 22,366원
실비보상율	(D) ÷ (5) = • 점유주파수대역폭,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 8.5% • 주파수 측정 : 1.1%

무선기기의 형식검정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는 <표 4-21>에서와 같이 297,974원으로 현요율 128,000원은 실비의 43%를 보상하고 있다. 무선기기의 형식검정은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그 요율은 공익원칙보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더 크게 적용받아

야 함에도 실비보상율은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표 4-22>의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비의 63%, <표 4-23>의 전자파장애 측정 수수료는 실비의 79%, <표 4-24>의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 수수료는 실비의 22%로 극히 낮은 보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4-25>전파 수탁 측정 수수료에는 실비의 8.5%와 1.1%로 더욱 낮은 보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第 3 節 국내 타부처의 유사 수수료와의 비교 분석

우리나라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은 수수료 징수근거에서 기인한다.

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불되는 성격 때문에 수수료의 관계법령은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서비스의 다양한 규격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구조와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부처의 유사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수수료의 체계가 상이하다. 따라서 상호 요율비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각각 수수료의 산출된 원가에 의한 실비보상율을 기초로 하여 상호비교를 시도코자 하였으나 검사 및 형식검정에 대한 연구사례가 없어, 허가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고 검사 및 형식검정 등에 관하여는 부처별 수수료 현황을 발췌하여 부록에 별첨하기로 한다.

1. 허가 수수료

허가 서비스는 그 가치에 의하여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 허가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요율액은 면적에 의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즉 200㎡미만의 경우 5,000원이고 이중 단독주택의 경우는 보다 적은 요율인 2,000원이다. 그러나 3만㎡의 경우는 200,000원으로 상당한 고율이다.

이것은 사무처리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가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점과 그 서비스의 가치비중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하여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26>와 <표 4-27>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원가분석료와 건축허가 수수료 요율 및 실비보상을 나타낸 것이나 이는 사무처리의 난이도는 감안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4-26> 건축허가 수수료의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건축허가 (B) 담당부서 : 건축과 행정계 (C)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 (D) 현요율 : <표 4-27> 참조 (E) 3년간 평균처리건수 증가율 : 1.08% (F)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280 (분) (a) 허가 현장조사 (6) (b) 건축허가 설계서 검토 (16) (c) 관련부서와 협의 : (112) (d) 서류보완사항 및 재조사 : (64) (e) 기 타 (82)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3,214원 (2) 감가상각비 : - (3) 임금, 여비 : 7,017원 (4) 인쇄, 제본 : 1,120원 (5) 광열비 (전기료) : 150원 (6) 소모품비 : 3,700원 (7) 총 계 : 15,201원
실비보상율	$(D) \div (7) = \text{<표 4-27> 참조}$

註 : 인천시 경우 (지방재정에서 수수료 요율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연구)

<표 4-27> 건축허가 수수료 요율 및 실비보상율

기 준	요 율	실비보상율
200 제곱미터 미만	5,000원	32.89%
	2,000원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3.16%
200 제곱미터 이상	10,000원	65.79%
1천 제곱미터 미만	3,000원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9.74%
1천 제곱미터 이상	25,000원	164.46%
5천 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50,000원	328.93%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0원	657.85%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200,000원	1,315.70%

註: 위의 금액은 허가 1건당 액수임.

건축허가 수수료에서 실비보상율은 <표 4-27>에서 보는 바와같이 수수료 요율액이 커짐에 따라 실비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무처리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선국 허가 수수료의 실비보상율과 건축허가 수수료의 실비보상율을 비교해 보면 무선국 허가 수수료는 최고 30.7%에서 최하 9.5%로 평균 15.8%로 극히 저조한데 반하여 건축허가 수수료는 최고 1,315.70% 최하 13.16%로 평균 324.8%의 높은 보상을 나타내고 있다.

2. 시험(자격검정) 수수료

다음 <표 4-28>은 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표이다. 실비보상율은 36.9%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의 실비보상율 62%보다 보상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험 수수료로 전액 충당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개인의 편의 정도가 높고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비보상 정도의 요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종 면허시험 수수료에 대한 요율균형을 고려하여서도 무선종사자 기술 자격검정 수수료의 요율조정은 필요한 것이다.

<표 4-28>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의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B) 담당부서 : 총무과 고시계 (C)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D) 현요율 : 1,000원 (E) 3년간 평균 처리건수 증가율 : 64.5% (F)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 3 (분) (a) 접수, 확인 : (2) (b) 접수부 기재 : (0.5) (c) 철압 및 확인도장 날인 : (0.5)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2,450원 (2) 감가상각비 : 38.50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제본 : 129.36원 (5) 광열비 (전기료) : 7.50원 (6) 소모품비 : 84.17원 (7) 총 계 : 2,709.53원
실비보상율	$(D) \div (7) = 36.91\%$

註 : 경기도청 경우

3. 자격증 발급 수수료

조리사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표 4-29>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비보상을 84.8% 수준이다. 그러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수수료의 실비보상을 <표 4-20 참조>은 22.7%로 상대적으로 너무나 낮다.

이는 자격수첩발급을 한국 무선종사자 협회에서 접수하고 서울체신청에서 발급하는 업무의 이원화도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29> 조리사 면허 수수료의 원가분석

수수료의 개항	(A) 수수료 명칭 : 조리사 면허 (B) 담당부서 : 시민과 민원계 (C) 근거법규 :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D) 현요율 : 1,200원 (E) 3년간 평균 처리건수 증가율 : 27.21% (F) 사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13(분) (a) 신 청 : (3) (b) 중지 및 구비서류수령 : (2) (c) 면허 대장기재 : (2) (d) 직인 및 면허증발급 : (4) (e) 압인, 교부 (2)
수수료의 원가 분석 (1건당 비용)	(1) 인건비 : 390원 (2) 감가상각비 : 1,011원 (3) 임금, 여비 : - (4) 인쇄, 제본 : 6원 (5) 광열비 : 1원 (6) 소모품비 : 7원 (7) 총 계 : 1,415원
실비보상율	(D) ÷ (7) = 84.81%

註 : 인천시 경우

第 4 節 外國의 전파관리 수수료 비교분석

전파관리 수수료에 대한 적정수준의 규명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파관리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 현행 수수료 요율의 실비 보상율을 산정하고, 국내 유사한 타부처 수수료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 한가지만으로 적정수준의 산정기준을 삼기에는 충분치 못함감이 있어 각국의 전파관리 수수료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수수료 규명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전파관리 수수료의 국제비교는 영, 미, 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한 영, 미국의 경우 수수료의 구조 및 체계가 우리나라의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비교검토가 난이할 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수수료 요율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 미 두나라는 제외하고 일본 수수료와의 비교분석만을 시도하였다.

1.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일본의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구조 및 체계는 우리나라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와 유사하거나 무선국의 종별 구분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및 항공기의 허가 특례사항과 고주파 이용설비, 수신장치”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선박무선국에 있어서 무선설비가 조난자동 통보설비 또는 레이다로 보는 것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서 무선설비가 레이다로 보는 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국으로 분류하고, 실험국을 아마츄어 무선국과 분류 별도의 무선국 종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변경허가에 대한 사항이 구분되고 있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 무선국 허가 수수료 구조와 다르다.

요율 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에 따른 구분으로 우리나라는 “미만”, “이상”을 송신기 규모의 기본 기준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 수수료는 “이하”, “초과”를 기준의 한계로 정하고 있다. 즉, “미만”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이하”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이상”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만 “초과”는 해당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수료 요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둘째 일본의 수수료는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사무처리의 난이도 및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표 4-30>은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조정시에 참고하고자 앞에서 산출한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와 비교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표 4-30> 무선국 허가 수수료 산출원가와 일본허가 수수료 비교

(단위 : 원)

무선국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 한 송신기 규모	산출원가	일본 수수료	차 액
○ 선박국 (총톤수 500톤미만의 어 선 선박국제외) 과항공기국	50W 미만	56,159원	56,002	+ 157
○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국	50W 미만	27,354원	27,354원	- 5,314
○ 방송국 (텔레비 전방송국 제외)	1KW 이상 10KW 미만	420,195원	448,013원	-27,818
○ 기타의 무선국 -간이무선국 -고정국	50W 미만 (일본 5W 이하 를기준함)	21,902원	28,001원	-6,009
	50W 이상 100W 미만 (일본 50W 이하 를 기준함)	66,932원	84,002원	-17,070

* 환율 100엔=466.68원 (1989년 9.24)

<표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된 원가와 일본 수수료 요율과는 큰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정수준의 요율 책정에 있어 원가보상을 기준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무선국 검사 수수료

일본의 무선국 검사 수수료 구조는 우리나라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신청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무선국의 종별구분에서부터 송신기의 규모 구분에까지 서로 상이한 점이 많다. 이는 허가 업무처리시나 검사시의 편의성에 따라 각각 종별설정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혼란과 복잡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 수수료는 모든 구분 설정이 허가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 수수료의 구조 및 요율 정책에 있어서도 실비보상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써 무선국에 2대 이상의 송신기가 있을 경우의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변경검사시 무선설비의 변경공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산출한 무선국 검사 수수료의 원가와 일본 검사 수수료를 비교한 것이다.

<표 4-31>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산출원가와 일본검사 수수료 비교

(단위 : 원)

무선국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	산출원가	일본 수수료	차 액
○ 선박국 (총톤수 500톤미만의 어선의 선박국제외)과 항공기국	• 5W이상 50W미만 (한국) • 10W초과 50W이하 (일본)	59,484	98,003	-38,519 배수:1.6배
○ 총톤수 500톤미만의 어선	• 12W이상 50W미만 (한국) • 10W초과 50W이하 (일본)	38,040	60,668	-22,628 배수:1.6배
○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제외)	• 10KW미만 (한국) • 1KW초과 10KW이하 (일본)	473,915	886,692	-412,777 배수:1.87배
○ 기타의 무선국 -간이무선국 -고정국	• 5W미만 • 50W이상 500W미만	27,802 100,286	70,002 256,674	-42,200 배수:2.5 -156,388 배수:2.6

* 환율 100엔=466.68원 (1989년 9.24)

위의 <표 4-3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박국 및 어선선박국 검사 수수료는 1.6배의 차가 나고 방송국과 기타의 무선국은 2~2.6배의 큰 차가 나고 있다. 이는 검사의 난이도,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한 측면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건비의 고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일본의 형식검정 수수료의 요율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한 고율이다. 주파수 측정장치의 수수료 요율이 우리나라는 178,000원인데 비하여 일본은 1,516,710원으로 무려 8.5배나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상기기는 19종이나 되는데 비하여 일본의 대상기기는 6종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 형식검정 수수료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 4-32> 한국과 일본의 형식검정 수수료 비교

(단위 : 원)

기 기 명	한국수수료 (원)	일본수수료 (원)	배 수
○ 주파수 측정장치	178,000	1,516,710	8.5
○ 경급자동 수신기	260,000	3,313,428	12.7
○ 레이더	224,000	3,313,428	14.7
○ 선박에 시설하는 구명용무선설비 기기	233,000	1,932,055	8.6
○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231,000	3,313,428	14.3
○ 무선방위 측정기	180,000	2,313,428	12.8

* 환율 100엔 : 466.68원 (89.9.24기준)

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수수료

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와 일본 수수료 비교

<표 4-33>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와 일본 수수료 비교

자격종별	구분	한국	일 본		비 고
			엔	원	
전파 통신기사 1급 (1급 무선통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수료	7,400	34,534	○ 1989년 9월 23일 기준 100 엔 = 466.68원 ○ ()안은 일본 무 선 종 사 자 명칭임 ○ 실기검정 수 료는 공 히 2,000원 임.
전파 통신기사 2급 (2급 무선통신사)		"	5,700	26,601	
전파 통신기능사 2급 (3급 무선통신사)		"	4,600	21,467	
특수급 무선통신사 항공급 (항공급 무선통신사)		1,700	4,600	21,467	
특수급 무선통신사 (전화급 무선통신사)		1,700	3,400	15,867	
무선설비기사 1급 (제1급 무선 기술사)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수수료	6,300	29,401	
무선설비기사 2급 (제2급 무선 기술사)		"	5,100	23,801	
특수 무선기사		1,700	2,300	10,734	
제1급 아마츄어 무선기사		1,700	4,000	18,667	
제2급 아마츄어 무선기사		1,700	3,400	15,867	
제3급 아마츄어 무선기사전신급 (전신급 아마츄어 무선기사)		1,700	2,300	10,734	
제3급 아마츄어 무선기사전화급 (전화급 아마츄어 무선기사)		1,700	2,300	10,73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의 요율은 우리나라에서는 일괄적으로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책정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자격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 4-3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6.5배에서 최고 12.6배에 달하고 있다.

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수첩 발급 수수료

<표 4-34> 기술자격 수첩발급 수수료와 일본 수수료 비교

(단위 : 원)

구 분 분 류	한 국 (원)	일 본		비 고
		엔	원	
무선종사자 기술 자격수첩발급 (무선종사자 면허 신청)	1,000	1,000	4,667	100엔:466.68원
선박 무선종사자 면허 신청 수수료		1,400	65,340	
재교부 신청 수수료	1,000	1,200	5,600	

일본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수수료는 위 <표 4-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5배 정도의 수준이다.

第 5 節 현행 전파관리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1. 현행 전파관리 수수료는 체계가 적정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조정이 장기간 미조정 상태에 있어 전파관리 서비스의 비용원가에 대한 실비보상율이 너무 낮다.
3. 전파자원의 이용 및 질서형성을 위한 급부행정의 가치가 보상되고 있지 않다.
4. 수수료 요율 기준에 일괄성이 없고 모호하다.

第 5 章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 조정

第 1 節 수수료 요율 결정의 기초이론

1. 수수료 요율의 의의

특정한 행정서비스와 그 비용부담을 직접 연결하는 수수료는 개별적 보상관계의 결과로써 징수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제도가 준공공재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공평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하며 이에 더하여 충분한 수입확보, 징수 행정상의 편의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용상의 기본원칙이 평가될 수 있는 단위가 요율이다.

여기서 요율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금수준과 요금체계의 두 개념을 고찰해 보자.

첫째, 요금수준이란 소비자나 이용자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요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징수해야 할 요금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요금체계란 요금총액을 개개의 소비자에게 분담시키는 방법, 구조, 요율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의 요율이란 전체 요금수입의 규모를 결정한 후에 해당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2. 수수료 요율의 결정원칙

수수료 요율이 결정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공공요금의 결정원칙을 고찰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의 결정에는 두개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총요금 수익을 정하는 요금수준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개별서비스 요금을 정하는 요금구조의 문제이다.

전자는 사업체가 사업전체로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한 총요금 수익액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개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의 제

공 및 이용여건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구체적인 개별요금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총수입 산정기준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 보수율)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은 합산하고 영업의 수익은 차감한 금액이다.

적정투자 보수율은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건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이며 경영외적 이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자금 및 공공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재원이 된다.

개별요금 수준을 개별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이므로 이용자간의 부당한 자격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자원이 서비스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도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요금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 기능인 생산동기 부여, 효율성 도무, 수요통제, 소득분배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요금구조 설정의 실제적인 목표로서 수익의 안정적 보호와 경영 능력의 제고 공평부담 경제외적 복지증진 등도 달성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에 의하면 개별요금의 요금구조의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전과정을 통하여 일괄된 과학적원리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려에서 결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금구조 결정의 기준으로서 서비스 원가주의에 입각한 서비스원가를 하한선으로 하고 서비스 가치주의에 입각한 서비스 가치를 상한선으로 하면서 그 외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의성,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서비스 원가 주의

서비스 원가주의 (Cost-of-Service Principle)는 행정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할 요금을 그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서비스 원가주의는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기준으로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익기업의 요금결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원가주의는 사업요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표준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

서비스 원가주의가 사업요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이유는 첫째 이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 요금은 소비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서비스의 원가를 지불 할 수 있는한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어떠한 분량으로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서비스가 원가 이상으로 공급될 때에는 서비스의 사용은 부당하게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서비스 원가주의에 의하여 요금을 결정할 때 서비스의 생산자는 적정한 수요

량만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그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조세에 의한 보조를 받는 사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셋째 서비스 원가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요금은 소득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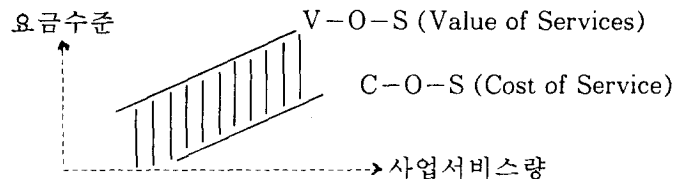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에서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서비스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결정된 요금은, 첫째 공익기업에서 생산한 서비스도 경제적 생산품이며, 둘째 이용자가 원가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므로 어떤 사용량일지라도 타당성을 가지며 셋째 공급자는 생산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적절한 요금결정 기준이라 하겠다.

나. 서비스 가치주의

서비스 가치주의 (Value-of-Service Principle)란 사업주체의 서비스 생산비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정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원리는 서비스 원가주의의 보조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운동경기장의 입장료, 연극, 음악회 등의 입장한 기본요금과 가치주의에 따른 등급별 요금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가치기준의 요금체계는 특히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할 때 보조적인 방법으로 많이 채택되지만 이를 요금결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가치를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1> 요금구조의 결정법위

다. 경쟁 가격주의

경쟁 가격주의 (Competitive Preice Principle)는 투자가 압력단체와 공익기업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것으로 공기업이 경쟁상태하에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가상적 경쟁가격을 공기업의 요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쟁상태의 가정하에서 사업 서비스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라. 사회적 원리주의 (Social Principles Rate Making)는 공공요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서비스의 가치라든가 서비스의 생산비용과 같은 경제적 원칙 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정치적 고려를 통하여 요금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서비스의 생산자가 얼마의 생산비용을 소비하였는가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가 향유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기준을 무시하고 서비스의 요금을 사회적 수요와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소비자의 요금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지불능력주의와 행정서비스의 요금을 통하여 국민전체의 복지증진을 산출하려는 사회 편익확산주의가 있다.

1) 지불능력주의

이 원칙은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요금을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주장되고 있는 근거는 첫째 공공서비스는 사회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둘째 요금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사회편익 확산주의

이 원칙은 공공요금 설정에 의하여 국민 전체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자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산품을 소비하는 자 등이 얻게 된 사회가치를 고려하여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자연히 사회전체의 이익만을 고려하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공공요금 결정의 원칙은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하는데는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행정서비스의 성격이 단순하게 한가지의 원칙만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효율성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성의 입장에서 공평성이라는 가치문제를 배제 시킬수 없는 것이 공공요금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차원에서 각각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질을 고려하여 해당 요금을 산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수수료 효율구조의 합리성 평가기준

수수료의 효율은 공공요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적인 수준이하에서 책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행할 경우에 비하여 그 가격은 상당히 염가인 것이 통례이다. 이는 시장가격을 하회하는 비용에 대한 적자액을 조세 수입에 의한 일반재원에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일반재원으로 그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효율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요금구조가 바람직한가 하는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효율수준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요금구조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지적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단순성, 이해가능성, 대중인정성, 적용용이성
- 해석상 혼란의 배제
- 공정수익율 조건하에서 총수입 필요액을 실현하는 유효성
- 매년 수입의 안정성
- 기존 소비자에 대하여 미예측의 변화를 최소로 하는 요율 자체의 안정성
- 총비용을 다수의 소비자간에 배분함에 있어서 개별요금의 공평성
- 요율간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의 제거
- 낭비적 사용의 억제와 함께 정당한 사용형태 및량을 권장할 수 있는 요율분류의 효율성

이상의 평가기준과 더불어 공공성의 견지에서 수수료의 요율체계는 GNP성장율이나 물가상승율 등을 그 요율구조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속성을 지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第 2 節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결정에 대한 접근

1.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결정의 한계성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을 적절히 조정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각 서비스에 대해 그 비용원가와 효용가치를 분석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그 요율이 결정된다고 해도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율에 따라 재조종이 계속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의 책정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전파관리 서비스에 대한 일괄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전파관리서비스의 효용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요금을 산출하는데 따르는 기술상의 단점이 있다. 즉 전파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행정활동이 명확한 한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부서가 중복되거나 또는 다른 행정사무에 부수되거나 복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율결정의 기초적 기준인 원가분석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즉 어느 부분까지의 행정비용을 비용원가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원가 계산도 정확성을 기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결정의 기준 및 방법

전파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결정은 “비용원가” 및 “필요한 경비”의 보상이라는 기준과 함께 정책적인 판단기준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파관리 서비스는 공익기업의 서비스 요금에서 처럼 사업채산성 있는 원칙만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성을 지니는 공기업의 요금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 이외의 기준을 고려하여 요율결정을 적정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인 고려를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결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전파관리 비용 또는 전파관리 수수료의 원가중에서 어느 정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가? 하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 점은 바로 전파관리 서비스의 이용자가 향유하는 “특별한 이익”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결정의 한계성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결정을 위해서는 각 서비스에 대한 성질을 고려 하여야 한다. 즉 전파관리 서비스를 우선 생활관련 서비스와 산업관련 서비스로 크게 나누고 다시 생활관련 서비스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인가, 선택적인 행정서비스인가, 또는 기초적인 행정서비스인가, 기초적 행정서비스라고 말할 수 없는 서비스인가 라는 기준에 의하여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결정 기준으로 삼는다.

○ 생활관련 서비스

- 필수적이면서 기초적인 행정서비스이 요금은 저렴 또는 무료인 것이 바람직하다.
- 필수적 행정서비스에도 반드시 행정서비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용자부담의 원칙을 도입하여 한계 비용을 요율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선택적 행정서비스이면서 기초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저요율제가 바람직하다.
- 선택적 행정서비스로서 동시에 반드시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라고 말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의 요율결정은 그 서비스의 목적 수익자층 등을 고려하여 차등요율 적용이 바람직하다.

- 산업관련 서비스는 독립채산에 준한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서비스의 요율결정을 결정한다.

第 6 章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조정

第 1 節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 조정의 필요성

1. 수지현황

전파관리 행정의 회계제도는 특별회계 즉 통신사업 특별회계로써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경영능률 증진을 위한 권력행정으로 부터의 분리, 공기업 특별회계 제도의 확립, 사업경영의 자주화, 조직운영면에서 독립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는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이익금의 자기처분을 그 요소로 하는데 주로 건전재정원칙과 수지적합의 원칙에 의한 사업의 요금결정정책원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파관리에 대한 수지상황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독립채산제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반하여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하여 왔고 그 적자 폭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한 전파관리 서비스의 원가구조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무선통신에 대한 요구가 상승함에 따라 더욱더 심화되어 갈것으로 예상된다.

2. 적자원인

전파관리 행정서비스의 경영상 수지적자는 첫째 전파관리 사업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그 업무처리의 과정상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인건비는 전파관리 사업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파관리 수수료의 원가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설비원가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인건비는 매년 인상을 거듭하여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60%나 인상되고 있다. 이는 소득증대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의 팽창에 기인한바 전파관리사업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조정이 1983이후 지금까지 미조정상태로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표 6-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건비 도매물가 등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7년동안이나 요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출은 모두 자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는 특별회계의 원리에 충실치 못한 것이다.

<표 6-1> 인건비 및 물가상승율

구 분 \ 년도별	81	82	83	84	85	86	87	88
임금인상율			15.8	11.0	8.7	9.2	10.1	13
도매물가 상승율	20.4	4.6	0.2	0.7	0.9	-1.5	0.5	2.7
도매물가 상승율	21.6	7.1	3.4	2.3	2.5	2.8	3.0	7.1

第 2 節 수수료 요율 조정시 고려사항

1. 일반적 규칙

수수료의 요율에 대한 적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의 규칙이 필요하다.

- 행정수수료는 사무의 성질이 주로 공익의 증진에 있기 때문에 저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요율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는 다른 요율수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주민생활의 기본에 관련되는 것이나 소득계층별에 대한 고려를 가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율 내지는 무료의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른 공공가격이나 요금보다도 공익성에 대한 배려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이것은 서비스의 수혜가치와 서비스의 원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 특정의 행정서비스로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전액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에 의해 소요경비의 전액을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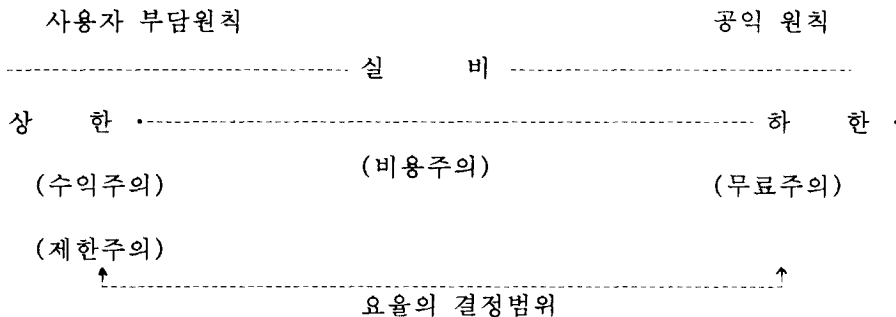
이상의 규칙에서 볼때, 1차적으로 요율조정을 위해서는 수수료 징수 서비스의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실비를 산정하고 산정된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요율과 비교하므로써 실비보상율을 알 수 있다. 이 비용이 수수료 요율에 어느 정도로 보상되어야 할지는 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 부담원칙에 충실하여 실비전액을 보상하는 요율로 책정하든지 아니면 공공원칙에 의거하여 실비이하의 저렴한 요율로 책정하든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수료 요율의 책정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실비이상의 수준까지 그 상한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즉

특정인이 누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요율책정에 고려하거나 행정목적상의 이유 때문에 제한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율의 요율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수료의 요율책정 범위를 원칙과 결부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6-2>이다.



<그림 6-1> 수수료 요율의 책정범위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수료의 요율추정범위가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공급부의 경제적 이익과 그 개별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즉 비용주의와 수익주의가 대부분 요율의 결정원칙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데 있어서는 이익자의 수익정도, 이익자의 생활수준 그리고 권력자작용이나 정치, 행정적인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요율조정시 고려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동종, 유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책정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특정인에게 개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한 허가, 인가, 신고, 등록등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은 고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익성이 크고 수혜자가 대중적인 수수료의 요율은 실비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서 책정한다.

2. 수수료의 요율 책정지침

수수료는 공공단체에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징수하는 요율액은 공급되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이냐하는 것에 따라 사무처리의 특성에 의거하여 요율책정상의 지침에 대한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증명서류의 발급 수수료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요율액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 창구 민원 사무의 직원비를 처리건수로 나누면 1건당 비용이 산출될 수 있지만 증명서의

발행은 개인의 영리행위 뿐만아니라 그 대부분은 공적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개별원가주의에 입각한 총비용의 원가를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수료의 1건당 비용을 계산하여 현재의 요율이 실비를 어느정도 보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그 보상율의 적정수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성격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실비보상율을 달리한다. 즉 경제활동에 부수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수수료는 실비보상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허가 사무에 따른 수수료

인·허가 사무는 대부분 서류조사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처리되는 사무로서 사무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허가의 사무는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수수료 요율의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에 비하여 비교적 요율수준이 높은 편이다. 또한 사무처리의 난이도와 서비스의 가치비중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 자격 검정에 대한 수수료

자격 검정에 대하여는 실비 이상에서 급수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무의 난이도, 전문성, 기술성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의 요율이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검정 수수료는 개인의 편익정도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비전액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라. 검사·시험 수수료

검사·시험 수수료는 경제, 산업활동에 매우 탄력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요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난이도에 따라 고율의 요율을 책정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공공적인 성격을 나름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포함하는 독립채산은 가혹하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원 운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라는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第 3 節 현행 전파관리 수수료 체계 및 요율조정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금구조는 사회적 여건에 적합하고 기술발전 추세에도 부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조정은 요금의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전파관리 수수료 체계를 점차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에 의거 서비스원가 및 서비스 가치에 충실하도록 요금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데 있다.

이하에서 각 수수료별로 조정 요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무선국 허가 신청 수수료 요율조정

무선국 허가 신청 수수료의 요율조정은 각 서비스의 실비원가와 일본 전파관리 수수료와의 비교 측면에서 각각 시도하였다. <표 6-2>는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조정 요율이다.

<표 6-2>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조정요율

무선국의 종별	공중전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 및 지정변경신청 수수료	재허가 신청 수수료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국 제외) 및 항공기국	10W미만 10W이상 50W미만 50W이상 500W미만 500W이상	37,000 56,000 84,000 126,000	28,000	28,000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국	10W미만 10W이상 50W미만 50W이상	16,500 28,000 47,600	14,000	14,00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미만 50W이상	28,000 47,600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한다)	100W미만 100W이상 1KW미만 1KW이상 10KW미만 10KW이상	141,500 283,000 425,000 510,000	70,000 140,000 210,000 250,000	70,000
텔레비전 방송국	100W미만 100W이상 1KW미만 1KW이상 10KW미만 10KW이상	236,000 354,000 460,000 552,000	120,000 180,000 230,000 270,000	120,000
실험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50W미만 50W이상 500W미만 500W이상	13,000 28,000 45,000	9,000	9,000
고주파 이용설비	100W미만 100W이상 1KW미만 1KW이상 10KW미만 10KW이상	16,500 28,000 47,600 71,400	14,000	14,000
기타무선국	3W미만 3W이상 10W미만 10W이상 50W미만 50W이상 100W미만 100W이상 500W미만 500W이상 수신장치 (송신장치가 없는 국)	22,000 33,000 49,500 69,000 83,000 91,300 22,000	11,000 17,000 25,000 35,000 42,000 46,000 10,000	18,000 10,000

2. 무선국 검사 수수료 요율조정

무선국 검사 수수료의 요율 조정은 서비스의 실비원가와 더불어 일본 검사수수료의 비교측면에서 요율 조정과 함께 수수료 구조를 변경하여 <표 6-3>과 같이 제시한다.

<표 6-3> 무선국 검사 수수료 조정 요율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정기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임시검사 수수료
선박국 (총톤수 500톤 이만의 어선 선박국제 외) 및 항공기국	10W미만	38,000	62,800	40,300	40,300
	10W이상 50W미만	58,000	94,200	60,400	60,400
	50W이상 500W미만	83,000	134,700	86,400	86,400
	500W이상	103,000	161,700	103,700	103,700
총톤수 500톤미만의 어선 선박국	10W미만	26,000	33,000	21,200	21,200
	10W이상 50W미만	38,000	50,800	40,300	40,300
	50W이상	53,000	70,100	44,900	44,900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한다)	100W미만	302,000	385,000	183,000	183,000
	100W이상 1KW미만	380,900	486,000	231,500	231,500
	1KW이상 10KW미만	480,000	612,000	291,500	291,500
	10KW이상	606,000	773,000	368,000	368,000
텔레비전 방송국	100W미만	326,000	489,000	188,000	188,000
	100W이상 1KW미만	489,000	733,500	282,000	282,000
	1KW이상 10KW미만	635,000	952,500	366,000	366,000
	10KW이상	762,000	1,143,000	439,600	439,600
실험무선국과 아마추어국	50W미만	21,300	28,900	23,900	23,900
	50W이상 500W미만	32,000	43,400	37,100	37,100
	500W이상	48,000	65,000	50,300	50,300
고주파 이용설비	100W미만	—	30,500	23,000	23,000
	100W이상 1KW미만	—	40,000	35,000	35,000
	1KW이상 10KW미만	—	75,000	53,000	53,000
	10KW이상	—	93,000	68,600	68,600
기타무선국	3W미만	28,000	36,400	27,200	27,200
	3W이상 3W미만	56,000	72,800	54,300	54,300
	10W이상 50W미만	84,000	109,200	81,500	81,500
	50W이상 100W미만	105,000	136,500	102,000	102,000
	100W이상 500W미만	126,000	163,800	122,000	122,000
	500W이상	150,000	195,000	146,000	146,000
	수신장치 (송신장치가 없는 국)	17,500	21,000	15,670	15,670

3. 무선종사자 技術자格 檢正 수수료 율율조정

무선종사자 技術자格 檢正 수수료 및 技術자格 申請발급 수수료는 그 實比보상수준에서 調整하여 <표 6-4>와 같이 제시한다.

<표 6-4> 무선종사자 技術자格 檢正 수수료 調整율

(단위: 원)

종 목	현 수 수 료	실 비 원 가	조 정 율 율
技術자格檢正 필기	1,700	2,973	3,000
“ 실기	2,000	6,096	6,000
技術자格 申請발급	1,000	4,405	4,500

4. 무선기기 型式檢正 수수료 율율조정

무선기기 型式檢正 수수료는 實比보상을 및 일본 型式檢正 수수료와의 比較를 통하여 율을을 調整하려 하였으나 타수수료 율율에 比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實比보상 수준에서 율을을 調整하여 <표 6-5>와 같이 제시한다.

<표 6-5>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조정요율

(단위 : 원)

검정기기명	장치별	현수수료요율	조정요율
-주파수 측정장치		178,000	356,000
-경보 자동 수신기		260,000	676,000
-구명전용 휴대무선 전신기기		233,000	426,000
-무선 방위 측정기		180,000	541,000
-의무 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231,000	676,000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설비		173,000	346,000
-선택 호출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송·수신장치	159,000	318,000
	송신장치	111,000	222,000
	수신장치	115,000	230,000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송·수신장치	154,000	308,000
	송신장치	92,000	184,000
	수신장치	99,000	198,000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 장치의 기기 (이동공중 무선전화장치 및 주파수 공용 무선전화 통신용 기기 포함)	송·수신장치	128,000	256,000
	송신장치	74,000	148,000
	수신장치	78,000	156,000
-라디오 부이의 기기		145,000	290,000
-27MHz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단측파대	100,000	200,000
	양측파대	68,000	136,000
	휴대무선전화	56,000	112,000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기		74,000	148,000
-경보자동 전화장치		38,000	760,000
-의료용 설비의 기기		79,000	158,000
-기상 원조국용에 속하는 라디오 존데 및 라디오 로봇기기		53,000	106,000
-제1종 레이더		224,000	448,000
-제2종 레이더		211,000	422,000
-제3종 레이더 및 제4종 레이더		198,000	396,000
-레이더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 레이더		134,000	268,000
푸룻팅 장치			

<표 6-6>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 조정요율

기자재명	현수수료요율	조정요율
자동식 교환기류	250,000	397,000
수동식 교환기류	175,000	278,000
전송 설비류	125,000	199,000
단말 장치류	125,000	199,000
선로설비국 및 단말장치의 부속 설비류	75,000	119,000
전원설비류	75,000	119,000

<표 6-7> 전자파장애 측정 수수료 조정요율

(단위: 원)

기 자 재 명	현수수료 요율	조정요율
모 템	218,000	275,704
키 폰	222,000	280,763
구 내 교 환 기	223,000	282,024
신용카드 조회기	220,000	278,234
텔 리 텍 스	220,000	278,234
데이타 다중화기		275,704

<표 6-8>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위탁 신청 수수료 조정요율

(단위: 원)

대 상 기 기	현수수료 요율	조정요율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	16,000	72,691

<표 6-9> 전파 측정 신청 수수료 조정요율

(단위: 원)

대 상 기 기	현 수수료 요율	조정요율
주파수 측정	250	22,366
전계강도, 잡음, 스프리어스	2,800	32,866
점유주파수 대역폭	2,400	32,866

<표 6-10>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 조정후 예상세입

(단위: 천원)

수 수수료종목	구 분	원가분석에 의한 인상비율	연간예상수입	일본수수료와의 비교	
				현행수수료위배수	연간예상수입
○ 무선국 허가		70%	1,342,288	5.1배	4,026,863
○ 무선국 검사		38%	3,162,575	3.5배	8,021,024
○ 기술자격검정		57.4%	54,741	5.0배	173,890
○ 무선기기 형식검정		52.6%	101,633	11.9배	768,383
합 계			4,661,237		12,990,160

- * ○ 한국무선종사자 협회 수입은 제외
○ '88년도 결산 세입 기준
○ 환율 100엔 : 466.68원 (1989. 9. 24. 기준)

第 7 章 전파관리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방안

第 1 節 전파관리 수수료의 체계 개선

전파관리 수수료 체계는 전파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편익과 전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전파관리 수수료 요율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의 정도, 사회적, 경제적 특수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이용자 상호간의 부담 형평이 유지되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 전파관리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방향

－무선국 허가 및 검사 수수료

무선국 허가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설정에 있어서 양자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형평을 기함과 아울러 업무수행의 간소화를 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체계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즉 무선국 허가 및 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분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설비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 설치되고 있는 무선설비를 분류하고,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하여야 한다.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무선기기의 형식검정 수수료는 형식검정 대상기기, 종별에 따라 책정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측정과 시험의 원인별에 따라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이 서비스원가주의에 합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진동, 충격, 연속동작, 온도·습도 등의 시험 또는 측정해야 하는 종목별로 시험방법에 따라 원가를 산정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검정의 난이도에 따라 원가보상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수수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여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第 2 節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조정 정례화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수료 요율 조정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전파관리 수수료의 정기적인 요율 조정은 물가상승을 및 인건비 상승을 정기적으로 수수료에 반영시키게 되므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파관리 수수료의 실비보상율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 조정은 정례화하여 장기간 미조정 상태로 누적된 수수료의 상승 요인을 한꺼번에 대폭 조정하므로써 수수료의 급등에 따른 전파이용자들과의 비능률적인 마찰과 저항감을 최소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상승율을 반영하여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전파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원가분석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가분석을 수행하면 그에 산정된 비용항목의 가격에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상승율이 이미 반영되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요율의 단가책정 방법으로서 차년도의 경제성장율과 지난년도 수수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해당수수료의 수입총액을 정하고 그 액수를 예상 처리건수로 나누어 요율의 단가를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전자의 원가분석 내용에 대한 보조적 방안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 3 節 전파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의 발굴

전기통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의 성숙기를 앞두고 전파자원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전파수용을 감안할때 전파자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파관리법에 의거하여 징수되는 전파관리 수수료는 '88년의 경우 세출 규모의 1/3에도 못미치는 32억원 수준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파의 이용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앞서 제기된 전파관리 수수료의 요율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파관리 수수료의 수입규모는 세출규모의 반에도 못미치는 형편으로 예산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파관리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으로 세입증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전파를 이용하는 수익부분에 대하여 일정율의 전파사용료의 징수를 피하는 등 세입재원의 발굴이 요망된다.

1. 전파사용료부과의 당위성과 필요성

전파관리의 혜택은 전파이용자라는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특정인 또는 집단에게 특정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도록 허가한것은 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반대급부로서 정부의 서비스를 받은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부과명칭

신규 세입원의 부과명칭으로는 전파관리 수수료, 전파사용료, 전파세 등의 명칭을 붙일 수 있으나, 가장 적합한 명칭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개념을 고찰하여 타당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통신과 방송무선국에 대하여 전파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단파는 그 통달범위는 한나라의 국경을 초월해서 이웃나라까지 도달가능하므로 일개국가의 자원이라기 보다는 인류의 공동적 자원의 성격때문에 한나라에서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또한 중단파의 경우 인명안전이나 최후의 긴급통신에 이용되며 ITU에서는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통신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중단파 사용을 억제하여 후진국에 이용하도록 무언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중단파인 경우 이용료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설사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통신로 용량이 적어서 수입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VHF대 이상은 중단파와는 달리 지역성이 강하고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만이 전파가 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 국가의 관리대상이 된다. 이는 한번 할당된 주파수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배타적 점용권이 발생할 뿐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더구나 통신의 국제개방추세에 따라 외국인에게 공중통신사업이나 방송이 허용되었을 때 국가재산을 외국인의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국가적 손실의 초래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파사용료 부과를 개방의 장벽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재원으로 삼아 연구개발기금의 확보 및 전파산업의 진흥목적과 방송프로그램의 육성기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목적사업에 전용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전파를 이용한 고정 통신의 경우 동축이나 광 전송로에 비해 경제적 구성이 가능하므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우 반사적 이득이 생기게 된다. 지금까지 공중전기통신사업은 국영 또는 국가전액 투자의 공영방식으로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동일 국가자산을 부과시킨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KTA, KMTC, DACOM등 모든 공중전기통신 사업자가 민영화되고 궁극적으로 완전 민간 자본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민영 또는 민간기업이 국가적 관리대상이 되는 전파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성이 보장 된다면 당연히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위성의 경우는 전파자원외에도 궤도지정이라는 준 영공적 자산이 되고있다.

그러나 전파는 인류 공동자산이라든가 또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부당성을 제기 하거나 또한 방송의 억압수단이라든가 통신사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론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의 경우에도 현재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을 막론하고 광고 방송에 의해 상당한 수익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향후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민간상업방송 또한 유한한 전파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용료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한다. 수수료와 사용료는 특정한 이익에 상응하여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가치라는 점과 공공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성격은 서로 같지만, 수수료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라면 사용료는 재산이나 영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즉 사용료와 수수료는 그 제공되는 역무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조세는 사용료나 수수료의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즉 재정수입의 획득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자력에 따라 공평하게 징수하는 부과금을 조세라 하며 징수원과 그 대상에 있어서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위의 세개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새로운 수입원의 명칭은 “전파사용료”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7-1> 전파전송과 타전송 방식과의 비교

	2선도체	동축	광	V/UHF	M/W
대역폭과 거리합수	1MHZ/km	20MHZ/km	400MHZ/km	100MHZ/km	150MHZ/km
이 동 성	없음			있음	
Network 구 성	점적 (Point-to-Point) 기능중심			면적 (Surface-to-surface) 기능중심	
접 촉 성	용 이	비교적불리	불 리	용 이	
확 장 성	비교적용이	비교적불리	불 리	용 이	
신 뢰 성	보 통	비교적양호	양 호	약간 떨어짐	
품 질 (외계영향)	보 통	비교적양호	양 호	약간 떨어짐	
가 격 면 (MHZ/km)	300	450	10	1 \$	
보 안 성	비교적강함	강 함	아주강함	보 통	
안 정 성	불 안			양 호	
응용분야	소규모	중규모	대량	방송통신·우주통신 이동체통신·재해방재통신 비교 우위적 고정통신	
	고정통신	대량통신	고정통신		

* 중계기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거리와 대역폭 한계
거리의 합수는 손실로써 (dB/km)대역폭은 펄프 dispersion의 합수이다. (S/km)

3.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부과기준의 설정을 위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7-2>와 같다.

<표 7-2>에서 주파수 점용도란 통신용에 사용되는 대역폭의 기준으로써 <표 7-3>과 같다. 예를 들어 중단파의 경우 음성통신이 3KHz 방송인 경우 10KHz이지만 VHF대 이상은 통신용 16KHz FM 방송은 200KHz, TV 방송대역폭은 6MHz이다. 주파수 폭의 이용 기준이 부과단위의 제1기준이된다. 사용기간은 전화의 회선과 같이 1달 기준으로 하되 사용할 경우는 1일 단위로 한다.

통달거리는 초단파 이상은 60km 중단파일때는 무한대이다. 따라서 직경 60km 구역이 1차적 분류 기준이된다. 그러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각대역에 따라 각도를 달리한다. 용도구분은 공공용과 사업용 그리고 통신과 방송용으로 구분되고 통신도 고정통신과 이동통신용으로 나눌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과대상은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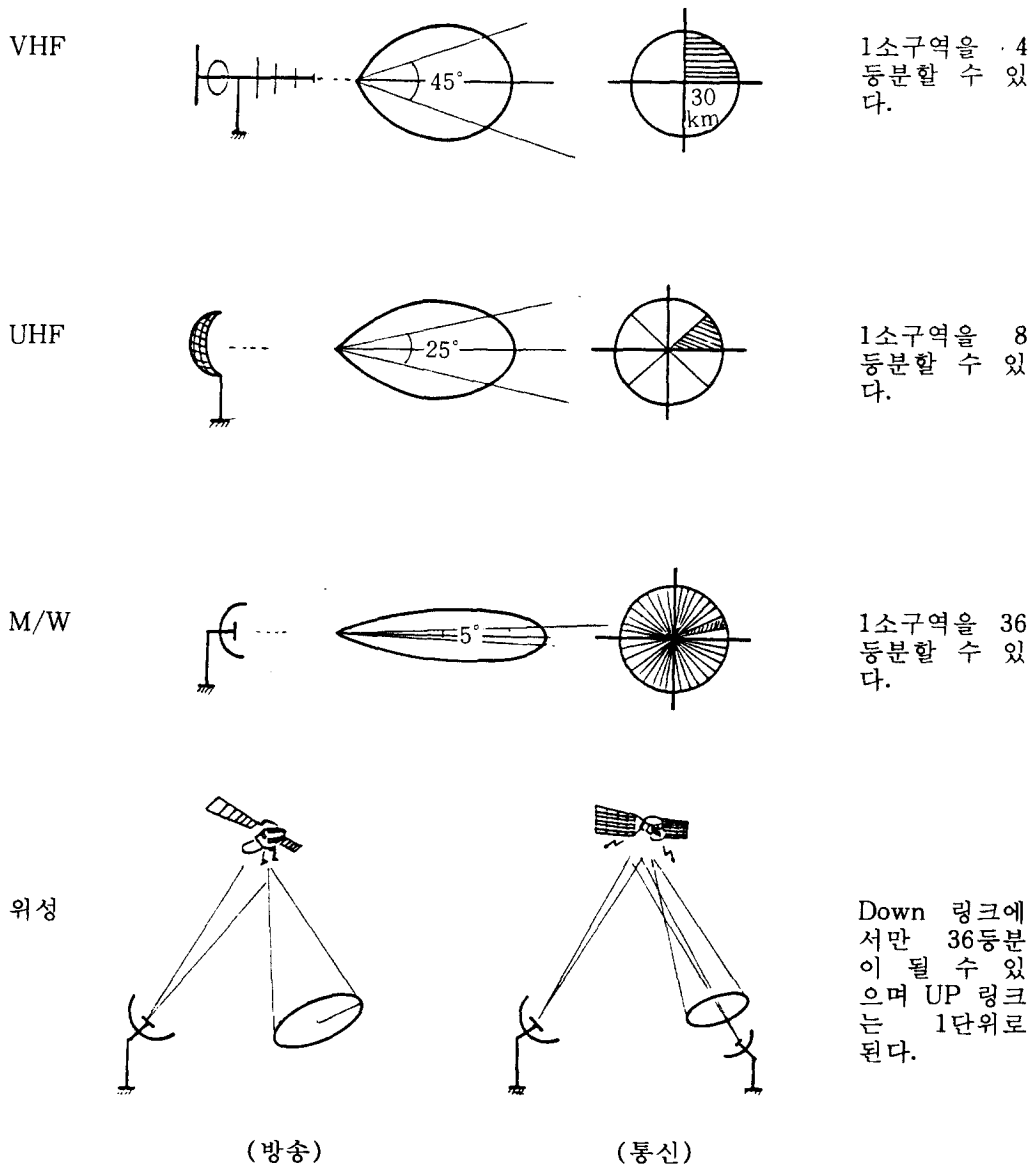
6. 기본 점유 주파수 수역

<표 7-3> 기본점유 주파수 수역

사용주파수대	용도	기본점유대역폭
526.5-1,606.5KHz	1. 방송 1. 고정국 2. 육상국 3. 이동국 가. 선박국 나. 육상이동국 다. 항공기국	10KHz 3KHz
	4. 방송국	10KHz
4-29.7MHz	1. 고정국 2. 육상국 가. 해안국 나. 항공기국 다. 기타국 3. 이동국 가. 선박국 나. 항공기국 다. 육상이동국	3KHz
	4. 방송국	10KHz
29.7-108MHz	1. 육상국 2. 이동국 3. FM방송국 4. TV방송국	16KHz 200KHz 6,000KHz
	1. 육상국 가. 해안국 나. 기타국 2. 이동국 가. 선박국 나. 육상이동국 3. TV방송국	16KHz 6,000KHz

4. 전파사용료 부과단위

그림 <그림 7-1>에서 보면 안테나 설계기준에 따라 방위각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VHF대는 45° 정도가 된다. 전파사용료 기준에서 볼때 2배 전도의 여유를 주어 90° 정도를 설정하면 전체적으로 4개의 지역의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VHF 대역에서는 1구역을 4등분할 수 있으며 UHF는 8등분 M/W는 36등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DOWN 링크의 경우에는 지상, 통신시스템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림 7-1> 지향성의 개념구분

부과를 위한 기본 단위의 설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7-4 부과단위>

용	도	방 송 업 무			고 전 업 무			이 동 업 무			우 주 통 신		기	타
		TV		Radio	전화	데이터	영 상	기지국	이동국		지구국 (UP)	우주국 (DOWN)		
		지상	DBS						육해상	항 공				
대 역 폭 (km)		6천		200	16	16	6000	16	16	16	16	16	16	16
	통 달 범 위	60km	3천km ²		60km ² (3천km ²)					60km (3천km ²)		60km (3천km ²)		
	방위각의 수 (평각)	VHF	4		4	1			4	-	-	1	4	4
UHF		8		8	1			8	-	-	1	8	8	
M/W		36		36	1			36	-	-	1	36	36	
고도각의 수 (임체각)		-	36							12	1	1	1	-

* 그러나 우주통신의 경우 실제통달거리는 수만 km에 이른다.

5. 부과주체 및 부과방법

부과주체는 전파를 관리하는 체신부가 되어야 하고 부담하는 사람은 무선국 허가에 한한다. 실제의 관리주체는 통신의 경우 전파관리 공단이, 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된다. 전파사용료의 용도 기술연구와 전파산업진흥 및 방송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투자 되어야한다.

부과 수준은 방송회선과 유선전용료 수준의 25% 기준이 적당하고 임시 사용인 경우 1일당 1%수준이면 적당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7-5>와 <표 7-6>과 같다.

<표 7-5 부과주체>

용도 \ 주체	행정주체	부담주체	관리주체	용도
상업용고정통신	체신부	사업자 또는 허가이용자	전파관리공단	기술연구개발 전파산업진흥
상업용이동통신	"	"	"	"
상업방송	"	방송사업자 또는 무선국 허가자	방송위원회	프로그램산업진흥 방송기술연구
기타	"	허가이용자	전파관리공단	관련기술개발

<표 7-6 적용방법>

용도	부과기간	부과표준액	부과요율
통신	1개월단위 (전용사용)	회선사용료	유선전용료의 25%수준
	1일단위 (임시사용)	"	유선전용료의 1%수준
방송	6개월단위	방송회선중계료	방송회선중계료 25%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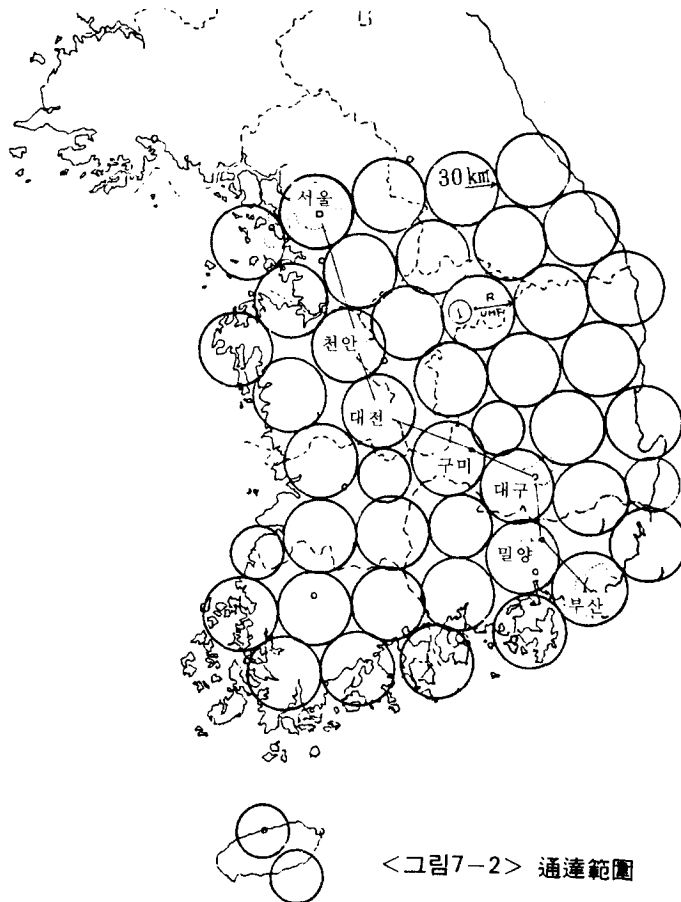
6. 부과 규모추정

1987년 한국전기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사용료를 위 기준에 의거부과하는 경우 <표 7-7>과 같다.

<표 7-7 전파사용료 부과를 위한 통계>

무 선 국 종 류			86년
방 송	TV방송송신국		—
	FM 방송송신국		—
통 신	방송중계용 링크회선		한국측수납액 : 1,632,043 \$
	M/W시외중계선	UHF	910회선
		M/W	35,652회선
	국제회선	M/W (스케더)	504
	위성		2,091
	이동체통신전화		8,150회선
	무선호출		80,000회선
	기 타		—

(1987년 전기통신공사 통계집)



또한 전국을 UHF대이상의 전파가 직접통달 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30km (직경 60km) 소구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한지역은 50개의 소권역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거칠때 M/W회선이 5개의 중계소를 거쳐 도달하고 1000회선이 구성되어 있다면 7개소구역×1000회선×12개월×6250원 (전용료의 1/4)=5억2천5백만원이 되고 1만회선일 경우 52억5천, 10만 회선일 경우 525억원이 된다. 전체적으로 볼때 1천억수준이상이 되리라고 본다.

第 4 節 전파관리의 전문화

현재 체신청과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무선종사자협회에서 분리 시행하고 있는 전파관리업무를 전파관리 기능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파 감시기능과 연구기능은 전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전파의 이용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의 관리는 정부에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파를 이용하는 이해집단으로 부터 일정율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성격의 “전파사용료”를 세입으로 확보 독립채산제에 의한 자금자족의 체제를 마련한다. 또한 무선국의 허가, 검사, 형식검정 및 무선종사자관리 등에 요구되는 제반 제도적 기능을 통합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 전파관리를 전문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전담기구의 운영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전파관리 수수료 세입에 의한다.

제8장 結 論

現在의 電波管理 수수료는 效率性보다는 社會의 公益性 측면이 더욱더 強調되어 電波管理 서비스를 유지 확충시키는데 所要되는 財源의 確保보다는 低廉한 費用으로 이용자가 效率的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裁원칙하에 수수료 政策이 樹立되고 수수료 체계가 形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電波管理 수수료 體系는 최근 들어 段階的 調整의 必要性이 급속히 增大되고 있다. 이는 電波管理 技術의 變化과정에서 또는 經濟發展에 따른 社會的 여건 變化로 서비스별 비용원가 구조의 變化가 電波管理 수수료의 實費原價 보상율을 더욱 낮게 하고 있다.

이처럼 電波管理 수수료의 調整要求가 漸增하고 있는 現在 定立은 政策的 當面 事案들이 調和를 이루어 段階的으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電波管理 수수료 政策이 樹立, 施行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電波管理 수수료의 實態와 그 料率 體系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나아가 不合理한 수수료 料率을 合理的으로 調整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고자 수수료의 基礎的 理論을 考察 수수료의 概念과 수수료 요금 決定에 公共料金의 基本原則이 適用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模索하였다. 따라서 電波管理 수수료의 料率은 서비스의 원가 뿐만아니라 그 價値와 社會적 效果에 대한 考慮를 통하여 綜合적으로 決定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電波管理 수수료 요금 調整의 合理性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現行 電波管理 수수료의 요금분석을 기하였다. 여기서는 요금책정의 1차적 基準으로 電波管理 수수료의 原價分析을 시도하였다.

수수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徵收金이기 때문에 서비스 提共에 所要되는 適定原價에 公共事業에 公여하고 있는 資產에 대한 滴定投資額을 포함한 總括原價를 報償하는 水準에서 수수료 요율이 決定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行 電波管理 수수료는 實費原價에도 크게 未達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원가주의와 공익주의 原則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資源의 효율적 配分과

負擔의 公平성을 阻害하고 電波管理 財政의 어려움을 더욱 加增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電波管理 수수료의 요금 分析의 일환으로 他部處 類似 수수료와의 요금 體系間의 均衡과 요금상의 隔差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금의 比較분석을 試圖하였으나 研究事例에 관한 資料 不足으로 충분한 比較분석을 거치지 못하여 類似 수수료간의 均衡關係를 밝히지 못했다.

電波管理 수수료 요금 조정은 서비스 原價主義를 採擇하여 安定的인 財源確保의 基盤을 構成하는 方向으로 서비스 가치에 부합한 요금을 提示하였다.

本 研究에서 提示된 電波管理 수수료 체계의 合理化 방안은 좀더 具體的인 研究와 檢討를 거쳐 漸進的으로 改善하므로서 電波 이용자로 하여금 수수료 構造의 變化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무리없이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社團法人 韓國電氣通信 產業研究所, “電波管理 行政 수수료의 調整에 관한 研究報告書”, 1976.
- 2) 韓國電子通信研究所, “電波管理 財源의 確保方案研究”, 1987.
- 3) 韓國地方行政 研究員, “地方行政에서 수수료 요금의 合理的 調整方案에 관한 研究”, 1988.
- 4) 전자시보사, “韓國電氣通信 年鑑”, 1985, 1989.
- 5) 財團法人 法令編輯 補給會, “大韓民國 現代法令 第8卷, 第24卷, 第25卷, 第35卷”
- 6) 遞信部, “遞信政策”, 1982.
- 7) 總務處, “民願事務 處理基準表”, 1989.
- 8) 유한성, “財政學”, 박영사, 1986.
- 9) 遞信部, “遞信統計 年報”, 1989.
- 10) 電波研究所, “86年 研究報告書”, 1986.
- 11) 通信開發研究員, “通信政策動向 1989. 여름, 第1卷 10號”, 1989.
- 12) 韓國無線從事者 協會, “無線局 檢査 핸드북”, 1986.
- 13) 電波振興會, “電波法令集”, 1983.
- 14) 遞信部, “電波管理 業務便覽”, 1987.
- 15) 遞信部, “豫算書”, 1988.
- 16) 임정제, “韓國의 效率의 電波管理에 관한 研究”, 1988.

부 록 목 차

부 록 1	97
1. 전파관리 수수료의 원가계산 원칙.....	99
2. 인건비에 대한 원가산출 기준	
부 록 2	100
1. 무선국 허가관계 수수료 개별원가 산출조서	100
가. 어선 선박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원가 산출표	101
나. 선박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 산출표	102
다. 방송국(TV방송국 제외)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 산출표	104
라. 기타의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 산출표	105
마. 아마츄어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 산출표	106
부 록 3	108
1. 무선국 검사 수수료 개별원가 산출조서	108
가. 어선 선박국 검사수수료 원가 산출표	109
나. 선박국(어선 제외) 검사 수수료 원가 산출표	110
다. 방송국(TV방송국 제외) 검사 수수료 원가산출표	111
라. 아마츄어 무선국 검사 수수료 원가산출표	112
마. 간이무선국 검사 수수료 원가산출표	113
바. 고정국 검사 수수료 원가 산출표	114
부 록 4	115
1.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원가 산출표(체신청)	115
2.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실기 수수료 원가 산출표(협회)	116
3.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원가 산출표	117
부 록 5	118
1.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원가 산출표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장치).....	118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118
나. 비용 원가표	118
2. EMI(전자파장애) 측정 수수료 원가산출표(구내 교환기)	119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119
나. 비용 원가표	119
3. 주파수 측정기기 교정위탁 수수료 개별원가 산출조서	119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119
나. 비용 원가표	120
4. 전파 수탁 측정 수수료 개별원가 산출조서	120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120
나. 비용 원가표	120
5.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 원가산출표(전송 설비류)	121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121
나. 비용 원가표	121

부 록 6122

1. 부처별 허가관계 민원 수수료 현황	122
2. 부처별 검사관계 민원 수수료 현황	125
3. 부처별 형식승인관계 민원 수수료 현황	126
4. 부처별 시험관계 민원 수수료 현황	126

부 록 1

1. 전파관리 수수료의 원가계산 원칙

가. 인건비에 대한 원가산출

- 1) 인건비: 직접 임금으로서 작업시간 및 작업량이 측정되는 인건비는 실제작업시간에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임금은 실제 개별 임금을 적용한다.
- 2) 적용기준(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5(89.1.1))
 - '89년 급여 산출 기준적용
 - 체신관서 소요인력 관리세칙(1인당 근무시간 적용)
 - * 시간당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년간근무일수 * 1일근무시간]
 - 산출기준: 임금율표 참조

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원가산출

- 1) 무선국 검사의 경우
구입단가 * 0.9 ÷ 내용년수(년) * 사용비율 ÷ 연간처리건수
- 2) 형식검정, EMI측정, 교정 등의 경우
 - 시간당 감가상각액 = 계측기 구입액 ÷ [내용년수 * 연간사용일 * 1일 사용기간]
 - 내용년수 적용: 통신 측정장비 10년

다. 임금 또는 여비

실제지출경비 또는 1988년도 결산액 ÷ 연간처리건수

라. 인 쇄 비

1988년도 연간 사용량의 총금액 ÷ 연간처리건수

마. 광 열 비

- 무선국 허가, 검사 등의 경우: 1988년도 소모량에 대한 총금액 * 사용비율 ÷ 총처리건수

－ 형식검정, EMI측정, 교정등의 경우:사용잡비 소비전력(KW) *KWH당 요금
(공공용 업무용 전력요금(물가자료) 적용)

바. 소 모 품

1988년도 소모량에 대한 총금액 *사용비율÷총처리건수

사. 기타 부대비용

총경비의 5%~20%까지 업무에 따라 적용

2. 인건비에 대한 원가 산출기준

○ 산출기준

구	분	4	5	6	7	8	9	(기능직) 8 등급	10등급	(고용직) 2 종
1. 봉급		569,500	496,500	419,000	365,500	318,000	276,500	278,800	186,000	167,100
2. 수당										
- 장기근속		80,000	80,000	80,000	70,000	70,000	60,000	50,000	40,000	40,000
- 가계보조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 가족수당 (3인 기준)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 실적수당		-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기말수당 (년 400%)		189,833	165,500	139,600	121,800	106,000	92,170	92,933	62,000	55,700
- 정근수당 (년 200%)		94,917	82,750	69,800	60,920	53,000	46,080	46,467	31,000	27,850
- 년월차수당 (10일 기준)		15,820	13,062	11,640	10,150	8,830	7,680	7,744	5,167	4,642
- 직무수당		56,950	49,650	41,900	36,550	31,800	27,650	27,880	18,600	1,670
- 특수업무수당		25,000	2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 판공비		120,000	80,000	-	-	-	-	-	-	-
3. 복지후생										
- 식대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체력단련비 (년 100%)		47,458	41,375	34,900	30,460	26,500	23,040	23,233	15,500	13,925
- 학비보조 (고1명, 중1명)		106,700	106,700	106,700	106,700	106,700	106,700	106,700	33,333	33,333
- 연금(5%)		55,310	49,056	44,265	39,488	35,690	31,870	31,870	31,870	31,870
합계										
- 월간급여액		1,501,488	1,330,133	1,132,805	1,026,568	941,520	856,690	803,757	561,600	514,220
- 일간급여액		50,000	44,338	37,760	34,219	31,384	28,556	26,792	18,792	17,141
- 시간급여액		6,256	5,542	4,720	4,277	3,923	3,570	3,349	2,340	2,143

부 록 2

1. 무선국 허가관계 수수료 개별원가 산출근거

무선국의 종별	공중전 전력에 의한 송신 기의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 및 지정 변경수수료		재허가 수수료	
		현	원 가	현	원 가	현	원 가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 만의 어선의 선박국제외) 과 항공기국	50W미만	9,400	56,159△	8,300	37,853△	8,300	21,576△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 선 선박국	50W이상	18,900	112,318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미만	3,200	27,354△	2,600	18,244△	2,600	11,666△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을 제외한다)	50W이상	8,400	71,354	4,600	32,278	4,600	32,278
	50W미만	3,200	27,354				
	50W이상	8,400	71,804				
	1KW미만	72,300	210,856				
	1KW이상 10KW미만	145,000	421,712△	42,000	271,186△	42,000	74,311△
	10KW이상	217,300	631,986				
텔레비전 방송국	1KW미만	116,000	337,370				
	1KW이상 10KW미만	217,300	631,986	57,300	369,975	57,300	101,381
	10KW이상	289,500	841,970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KW미만	4,000	28,284△				
	50KW이상 100KW미만	9,000	63,639	2,800	15,785△	2,800	11,666△
	100KW이상	13,000	91,923				
고주파 이용설치	50W미만	3,200	27,354	2,600	18,244		
	50W이상	8,400	71,804	4,600	32,278		
기타의 무선국	50W미만	12,000	42,273△				
	50W이상 100W미만	19,000	66,932△				
	100W이상 500W미만	32,000	112,728	7,000	47,963△	7,000	32,418△
	500W이상	40,000	140,910				
	수신장치(송신장치가 없 는 국)	12,000	42,273	3,000	10,568	3,000	10,568

가. 어선 선박 허가신청 수수료의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1. 허가신청 민원접수처리 -업무처리 내역 선박국과 동일	8급	8급	8급	15	10	10	재허가시에 는 가허가 생략
2. 업무과 소관업무 심의 (법정 서류심사)	7급	7급	7급	60	30	30	
3. 통신보안 심의	7급	7급	7급	60	30	30	
4. 기술과 소관업무 심의 (기술 기준심사)	7급	7급	7급	120	60	30	
5. 주파수 할당	7급	7급	7급	60	60	30	
6. 가허가	9급	9급		30	30	-	
7. 무선국 허가장 발급	9급	9급	9급	30	30	3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 허 가	
○접 수	981	654	654	○변경사항이 기 술심사를 요하 지 않거나, 주파 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는 생략함. ○재허가시는 가 허가를 생략함.
○업무과 소관업무 심의	4,277	2,139	2,139	
○보 안 심 의	4,277	2,139	2,139	
○기술과 소관업무 심의	8,554	4,277	2,139	
○주파수 할당	4,277	4,277	2,139	
○가 허 가	1,785	1,785		
○허가장 발급	1,785	1,785	1,785	
소 계(인건비)	25,936	17,056	10,995	
○감가상각비	60	60	60	
○인 쇄 비	50	50	50	
○광 열 비	3	3	3	
○소 모 품 비	2	2	2	
○기타 부대비(5%)	1,303	1,073	556	
합 계	27,354	18,244	11,666	

나. 선박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1. 허가신청 민원접수처리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 ○수수료의 수납 (후납의 경우 고지서에 의한 납부) ○접수증 교부 ○서류 결재 ○민원서류 카드 작성 ○서류일체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 ○기타 부대업무	8급	8급	8급	15	10	10	
2. 업무과 소관부문 심의 (법정 서류심사) ○서류심사 ○신청 내용상의 적법요건 심의 ○심의후 다음 사항에 대한 지정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공사업자의 선임여부 및 자격 -허가의 조건등	7급	7급	7급	240	120	60	
3. 무선국 통신보안 심의 ○심의서 작성 ○보안조치내역 통보	7급	7급	7급	60	60	60	
4. 기술과 소관 업무심의 (기술기준심사) ○통신방식, 통신망의 구성, 통신사항이 무선설비의 특성과 적합여부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편차 및 폭, 고주파의 강도 등 전파의 질이 무선설비 규칙 제3조 내지 5조에 합당한가 ○안전시설의 설치여부 ○운영에 필요한 계기, 예비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전파의 형식 및 폭을 송신장치의 기기설명서 무선기기 형식검정 합격증 또는 회로도에 의하여 지정하였는가. ○공중선전력의 적정 지정여부	6급	6급	6급	240	120	60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5. 주파수 할당 ○주파수 할당 -주파수 할당의 의뢰서 작성 -전파지정 보고서 작성 -무선국 식별 부호의 지정 ○주파수 카드관리	7급	6급	6급	120	120	60	
6. 가 허 가 ○가허가 사항 통보 -시설자 -검사 관할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부	9급	9급	-	30	30	-	
7. 무선국 허가 ○허가장 발급 ○허가장 교부 ○무선국 허가사항 통보 ○면허에 관한 통보	9급	9급	9급	30	30	3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 허 가	
○접 수	981	654	654	○변경허가 사항 이 기술심사를 요하지 않거나, 주파수 변경을 하지않는 경우 에는 관련 업 무처리 절차를 생략하게 됨. ○재허가는 가허 가를 생략함.
○업무과 소관업무 심의	17,108	8,554	4,277	
○보 안 심 의	4,277	4,277	4,277	
○기술과 소관업무 심의	18,880	9,440	4,720	
○주파수 할당	8,554	9,440	4,720	
○가 허 가	1,785	1,785		
○허가장 발급	1,785	1,785	1,785	
소 계(인건비)	53,370	35,935	20,433	
○감가상각비	60	60	60	
○인 쇄 비	50	50	50	
○광 열 비	3	3	3	
○소 모 품 비	2	2	2	
○기타 부대비(5%)	2,674	1,803	1,028	
합 계	56,159	37,853	21,576	

다. 방송국(TV방송국 제외)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 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1. 허가신청 민원접수처리 - 타무선국과 동일	8급	8급	8급	30	10	10	
2. 업무과 소관업무심의 (법정 서류심사) - 타무선국과 동일	6급	6급	6급	480	240	480	
3. 무선국 통신보안 심의 - 타무선국과 동일	6급	6급	6급	120	60	60	
4. 기술과 소관업무 심의 (기술 기준심사) ○개설(변경)이유의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 개선키준 ○프로그램 중계망 구성 ○주파수 범위 및 정격출력 ○발진 주파수와 체배방식 ○송신기 주파수 편이치 및 최고변조 주파수 ○수신기국부발진 주파수와 중간 주파수 ○수신기 경간주파 증폭부 통과 대역폭 ○공중설계 ○송신장치 계통도 ○수신장치 계통도 ○기무선국과 혼신여부 ○국제규정과의 합치여부 ○방송구역 산출의 적합성 ○방송구역 변경유무(변경)	6급	6급	6급	480	240	60	
5. 주파수 할당 ○주파수 지정 ○감시지시 ○IFRB 통고	6급	6급	6급	480	240	120	○주파수 지정이 필요할 경우 허가의 1/2을 적용함. ○실사가 필요한 경우 생략
6. 실사(1일)	7급	7급	—	4760	2880	—	
7. 문화공보부와의 합의	6급	6급	—	120	60	—	
8. 가허가	6급	6급	—	480	480	—	
9. 방송국 허가	6급	6급	6급	120	120	120	
	8급	8급	8급	60	60	60	
	8급	8급	8급	60	60	6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 허 가	
○접 수	1,962	654	654	○주파수 지정 또는 기술심의가 필요없는 경우와 문공부와 협의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처리 절차를 생략한다. ○현장실사: -서울에서 대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주파수 할당시 업무비중을 43.5%를 기준함.
○법정서류 심의	37,760	18,880	37,760	
○통신보안 심의	9,440	4,720	4,720	
○기술기준 심의	47,760	18,880	4,720	
○주파수 할당	199,140	99,570	9,440	
-주파수 지정	37,760	18,880	-	
-감시지시	410,592	205,296	-	
-IFRB 통고	9,440	4,720	-	
○현지실사	67,960	67,960	-	
○문공부와 협의	9,440	9,440	9,440	
○가 허 가	3,923	3,923	-	
○허가장 발급	3,923	3,923	3,923	
소 계(인건비)	371,308	227,950	70,657	
○감가상각비	60	60	60	
○여 비	30,207	30,207		
○인 쇄 비	50	50	50	
○광 열 비	3	3	3	
○소 모 품 비	2	2	2	
○기타 부대비(5%)	20,082	12,914	3,539	
합 계	421,712	271,186	74,311	

라. 기타의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1. 허가신청 민원접수처리	8급	8급	8급	15	15	10	
2. 법정 서류심사	6급	6급	6급	240	180	180	
3. 통신보안 심의	6급	6급	6급	60	60	60	
4. 기술기준 심사	6급	6급	6급	120	120	60	
5. 주파수 할당				331	166	60	
-주파수 내정	6급	6급	6급	960	480	-	
-감시지시	7급	7급	-	720	360	-	
-IFRB 통고	6급	6급	-	120	60		
6. 가 허 가	9급	9급	-	30	30	-	
7. 무선국 허가장 발급	9급	9급	9급	30	30	3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접 수	981	654	654	○고정국을 기준함. ○변경사항이 기술심사 또는 주파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여백을 생략함. ○재허가시는 가허가를 생략함. ○주파수 할당시 업무 비중은 18.4%를 기준함.
○법정서류 심의	18,880	14,160	14,160	
○통신보안 심의	4,720	4,720	4,720	
○기술기준 심의	9,440	9,440	4,720	
○주파수 할당	26,039	13,020	4,720	
○가 허 가	1,785	1,785	-	
○무선국 허가장 발급	1,785	1,785	1,785	
소 계(인건비)	63,630	45,564	30,759	
○감가상각비	60	60	60	
○인 쇄 비	50	50	50	
○광 열 비	3	3	3	
○소 모 품 비	2	2	2	
○기타 부대비(5%)	3,187	2,284	1,544	
합 계	66,932	47,963	32,418	

마. 아마츄어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1. 허가신청 민원접수처리	8급	8급	8급	15	10	10	
2. 법정 서류심사	7급	7급	7급	60	30	30	
3. 통신보안 심의	7급	7급	7급	60	30	30	
4. 기술기준 심사	6급	7급	7급	120	160	30	
5. 주파수 할당	7급	7급	7급	60	30	30	
6. 가 허 가	9급	9급	9급	30	30	30	
7. 무선국 허가장 발급	9급	9급	9급	30	30	3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허 가	변경허가	재허가	
○접 수	981	654	654	○변경사항이 기술 심사를 요하지 않거나, 주파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업 무 처리절차를 생략함. ○재허가시에는 허 가 생략함.
○법정서류 심의	4,277	2,139	2,139	
○통신보안 심의	4,277	2,139	2,139	
○기술기준 심의	9,440	4,277	2,139	
○주파수 할당	4,277	2,139	2,139	
○가 허 가	1,785	1,785	—	
○무선국 허가장 발급	1,785	1,785	1,785	
소 계(인건비)	26,822	14,918	10,995	
○감가상각비	60	60	60	
○인 쇄 비	50	50	50	
○광 열 비	3	3	3	
○소 모 품 비	2	2	2	
○기타 부대비(5%)	1,347	752	556	
합 계	28,284	15,785	11,666	

부 록 3

1. 무선국 검사수수료 개별원가 산출조서

(단위: 원)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임시검사 수수료	
		현	행	현	행	현	행	현	행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	12W미만	14,200	28,762	9,100	20,218	9,000	24,454	9,100	23,287
	12W이상 50W미만	22,000	44,562△	14,000	31,104△	14,000	38,040△	14,000	35,826△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을 제외)	50W이상	34,000	68,859	22,000	48,878	21,000	58,147	22,000	56,298
	10KW미만	416,000	505,129△	194,000	419,506△	326,000	461,705△	194,000	458,873△
텔레비전방송국	10KW이상 50KW미만	505,000	613,197	236,000	510,327	396,000	575,676	236,000	558,217
	50KW이상	653,000	792,906	305,000	659,533	512,200	744,599	305,000	721,42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100W미만	358,000	520,433	137,000	199,160	272,000	395,413	137,000	199,160
	100W이상 1KW미만	729,000	769,021△	199,600	290,163	402,300	584,834△	199,600	290,163△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1KW이상 10KW미만	700,000	1,017,610	268,000	389,599	533,000	774,837	268,000	389,599
	10KW이상	842,000	1,224,038	322,200	468,391	640,300	930,822	322,200	468,391
고주파이용설비	50W미만	8,100	18,244	7,400	18,976	7,000	22,895	7,400	20,522
	50W이상 500W미만	15,200	34,236△	11,200	28,721△	10,000	32,707△	11,200	31,060△
고주파이용설비	500W이상 5KW미만	25,400	57,210	18,000	46,159	16,000	52,331	18,000	49,918
	5KW이상	33,000	74,328	22,200	56,929	20,000	65,414	22,200	61,566
기타의 무선국	100W미만	9,200	30,090	7,000	22,895			7,000	22,895
	100W이상 1KW미만	14,000	45,789	10,000	32,707			10,000	32,707
기타의 무선국	1KW이상 10KW미만	22,200	726,090	16,000	52,331			16,000	52,331
	10KW이상	28,000	915,798	20,000	65,414			20,000	65,414
기타의 무선국	5W미만	24,400	29,472	18,200	26,338	19,000	28,678	18,200	26,294
	5W이상 50W미만	66,300	60,445△	49,300	47,780△	50,400	59,484△	49,300	46,151△
기타의 무선국	50W이상 500W미만	111,000	103,844△	82,300	91,451△	84,000	99,612△	82,300	97,229△
	500W이상 5KW미만	146,100	136,681	109,000	121,120	111,000	132,521	109,000	128,772
기타의 무선국	5KW이상	174,000	162,782	129,300	143,677	132,200	157,831	129,300	152,754
	수신장치(송신장치가 없는 국)	8,200	26,819	7,000	22,895	7,000	22,895	7,000	22,895

(주) 산출원가는 △표한 것(국수의 분표율이 비교적 큰것)만을 실제로 산출하였으며 기타는 현수수료 요율을 적용산정함.

가. 어선선박국 검사수수료 원가 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동급				소요시간(분)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4급	4급	4급	4급	10	10	30		
○검사 접수	5급	5급	5급	5급	5	5	5	5	
○검사(검사지출장 소요시간포함)	4급	4급	4급	4급	400	240	300	300	
○검사보고서 작성 및 결재	4급	4급	4급	4급	30	30	30	30	
○기타 부대업무	5급	5급	5급	5급	55	55	55	55	
합 계					500	340	420	39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662	662	1,986	—	
○검사 접수	278	278	278	278	
○검 사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포함)	26,473	15,884	19,855	19,855	
○검사 보고서 작성 및 결재	1,986	1,986	1,986	1,986	
○기타 부대업무	3,058	3,058	3,058	3,058	
소 계(인건비)	32,457	21,868	27,163	25,177	
○감가상각비	1,043	417	1,043	1,043	
○여 비	3,500	3,500	3,500	3,500	
○인 쇄 비	130	130	130	130	
○광 열 비	3	3	3	3	
○소 모 품 비	2	2	2	2	
○기타 부대경비(20%)	7,427	5,184	6,368	5,971	
합 계	44,562	31,104	38,209	35,826	

나. 선박국(어선제외) 검사 수수료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4급	4급	4급	4급	10	10	30		
○검사 접수	5급	5급	5급	5급	5	5	5	5	
○검사(검사지출장 소요시간포함)	4급	4급	4급	4급	540	420	540	540	
○검사보고서 작성 및 결재	4급	4급	4급	4급	90	60	60	60	
○기타 부대업무	5급	5급	5급	5급	55	55	55	55	
합 계					700	550	690	66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662	662	1,986	—	
○검사 접수	278	278	278	278	
○검 사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포함)	35,739	27,796	35,739	35,739	
○검사 보고서 작성 및 결재	5,956	3,971	3,971	3,971	
○기타 부대업무	3,058	3,058	3,058	3,058	
소 계(인건비)	45,693	35,765	45,032	33,781	
○감가상각비	1,043	417	1,043	1,043	
○여 비	3,500	3,500	3,500	3,500	
○인 쇄 비	130	130	130	130	
○광 열 비	3	3	3	3	
○소 모 품 비	2	2	2	2	
○기타 부대경비(20%)	10,074	7,963	9,942	7,692	
합 계	60,445	47,780	59,658	46,151	

다. 방송국(TV 방송국 제외) 검사수수료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등급				소요시간(분)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계획 수립		6급	6급	6급	10	10	30		
○검사(검사지출장 소요시간포함)		6급	6급	6급	3,840	3,000	3,360	3,360	
○검사보고서 작성 및 결재		6급	6급	6급	120	60	120	120	
○기타 부대업무		9급	9급	9급	60	60	60	60	
합 계					4,030	3,130	3,570	3,54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787	787	2,360		○감가상각비 $297,842,346 \times 0.9 \div 10(\text{내용년수}) \div \text{처리건수}(88\text{년 기준 } 36,069\text{건}) = 743\text{원}$ 변경: $743 \div 2 = 372\text{원}$ 준공: $743 + (743 \div 4) = 929\text{원}$
○검 사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포함)	302,080	236,000	264,320	264,320	
○검사 보고서 작성 및 결재	9,440	4,720	9,440	9,440	
○기타 부대업무	3,570	3,570	3,570	3,570	
소 계(인건비)	315,877	245,077	279,690	277,330	
○감가상각비	929	372	929	929	
○여 비	104,000	104,000	104,000	104,000	
○인 쇄 비	130	130	130	130	
○광 열 비	3	3	3	3	
○소 모 품 비	2	2	2	2	
○기타 부대경비(20%)	84,188	69,917	76,951	76,479	
합 계	505,129	419,506	461,705	458,873	

라. 아마츄어 무선국 검사수수료 원가 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동급				소요시간(분)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4급	4급	4급		10	10	30		
○검사 접수	5급	5급	5급	5급	5	5	5	5	
○검사(검사지출장 소요시간포함)	4급	4급	4급	4급	300	210	240	240	
○검사보고서 작성 및 결재	4급	4급	4급	4급	30	30	30	30	
○기타 부대업무	5급	5급	5급	5급	55	55	55	55	
합 계					700	550	690	66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662	662	1,986		
○검사 접수	278	278	278	278	
○검 사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포함)	19,854	13,898	15,883	15,883	
○검사 보고서 작성 및 결재	1,986	1,986	1,986	1,986	
○기타 부대업무	3,058	3,058	3,058	3,058	
소 계(인건비)	23,852	19,882	23,191	21,205	
○감가상각비	1,043	417	1,043	1,043	
○여 비	3,500	3,500	3,500	3,500	
○인 쇄 비	130	130	130	130	
○광 열 비	3	3	3	3	
○소 모 품 비	2	2	2	2	
○기타 부대경비(20%)	5,706	5,706	5,706	5,706	
합 계	34,236	28,721	33,443	31,060	

마. 간이무선국 검사 수수료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동급				소요시간(분)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4급	4급	4급		10	10	30		
○검사 접수	5급	5급	5급	5급	5	5	5	5	
○검사(검사지출장 소요시간포함)	4급	4급	4급	4급	210	180	180	180	
○검사보고서 작성 및 결재	4급	4급	4급	4급	30	30	30	30	
○기타 부대업무	5급	5급	5급	5급	55	55	55	55	
합 계					310	280	300	27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662	662	1,986		
○검사 접수	278	278	278	278	
○검 사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포함)	13,898	11,912	11,912	11,912	
○검사 보고서 작성 및 결재	1,986	1,986	1,986	1,986	
○기타 부대업무	3,058	3,058	3,058	3,058	
소 계(인건비)	19,882	17,896	19,220	17,234	
○감가상각비	1,043	417	1,043	1,043	
○여 비	3,500	3,500	3,500	3,500	
○인 쇄 비	130	130	130	130	
○광 열 비	3	3	3	3	
○소 모 품 비	2	2	2	2	
○기타 부대경비(20%)	4,912	4,390	4,780	4,382	
합 계	29,472	26,338	28,678	26,294	

바. 고정국 검사수수료 원가산출표

1)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무처리자동급				소요시간(분)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4급	3급	4급	4급	10	10	30		
○검사 접수	5급	5급	5급	5급	5	5	5	5	
○검사(검사지출장 소요시간포함)	3급	3급	3급	3급	600	480	540	540	
○검사보고서 작성 및 결재	3급	3급	3급	3급	60	60	60	60	
○기타 부대업무	5급	5급	5급	5급	55	55	55	55	
합 계					730	610	690	650	

2)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원)				비 고
	준공	변경	정기	임시	
○검사계획 수립	662	662	1,986		
○검사 접수	278	278	278	278	
○검 사 (검사지 출장 소요시간 포함)	48,510	38,808	43,659	43,659	
○검사 보고서 작성 및 결재	4,851	4,851	4,851	4,851	
○기타 부대업무	3,058	3,058	3,058	3,058	
소 계(인건비)	59,359	47,657	53,832	51,846	
○감가상각비	1,043	417	1,043	1,043	
○여 비	28,000	28,000	28,000	28,000	
○인 쇄 비	130	130	130	130	
○광 열 비	3	3	3	3	
○소 모 품 비	2	2	2	2	
○기타 부대경비(20%)	17,307	15,242	16,602	16,205	
합 계	103,844	91,451	99,612	97,229	

부 록 4

1.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원가산출표(체신청)

○응시자수 10,000명

○응시과목 4과목

업무처리별 내역	담당자	인원수	소요시간	원 가	비 고
1. 계획 수립				1,019,520	
○체신부	6급	1명	24	113,280	
○체신청	6급	8명	24	906,240	
2. 접 수	9급	8명	24	685,440	
3. 시험문제 출제	6급	1명	16	2,325,520	인건비 75,520
○객관식				1,050,000	700문제 * 1,500원
○주관식				400,000	100문제 * 40,000/10문제
○실기문제	6급	1명	8	800,000	5종 * 2과목 * 2회 * 4,000
4. 문제선정 및 심의	5급	1명	40	651,680	인건비 221,680
○객관식				280,000	30,000 * 700 * --- * ---
○주관식				150,000	30,000 * 100 * --- * ---
5. 문제편집	5급	1명	48	866,016	인건비 266,016
○특수급 무선통신사				240,000	3과목 * 6회 * 6,000원 * 2인
○아마추어 무선				264,000	1과목 * 6회 * 6,000원 * 2인
○특수급 무선기사				96,000	3과목 * 6회 * 6,000원 * 2인
					1과목 * 4회 * 6,000원 * 2인
6. 감독수당				5,200,000	2과목 * 4회 * 6,000원 * 2인
○필기(250실)				4,000,000	(10,000명/40명) * 8,000원 * 2인
○실기(50실)				800,000	(10,000명/20명) * 8,000원 * 2인
○시험본부 운영위원				400,000	25 * 8,000원 * 2인
7. 채 점				3,586,000	10,000명 125 * 2명
○객관식				2,500,000	6회 15,000 * 2명
○주관식				564,000	160부 * 6회 * 200 * 2명
○실 기				552,000	12회 15,000 * 2명
					40부 * 12회 * 200 * 2명
8. 시험장 임대	8급	8명	4	1,000,536	250실 3,500원 인건비 125,536

업무처리별 내역	담당자	인원수	소요시간	원 가	비 고
9. 인 쇄 비	5급	1명	48	1,766,016	인건비 266,016
○문 제				930,000	
- 객관식				900,000	10,000명 * 3과목 * 30
- 주관식				30,000	1,000명 * 1과목 * 30
○답 안 지				330,000	
- 객관식				300,000	10,000명 * 3과목 * 10
- 주관식				30,000	10,000명 * 1과목 * 10
○검정응시원서				240,000	12,000명 * 20원
10. 검정문제 교부출장	6급	1명	16	3,665,076	출장여비
○체 신 부				75,520	○체신부
					- 1명 * 2일 * 22,000 * 25회
					- 1명 * 1일 * 22,000 * 25회
					○체신청
					- 8개소 * 3일 * 2명 * 19,500
					- 8개소 * 3일 * 2명 * 13,000
					- 8개소 * 19,500 * 2명
					- 8개소 * 13,000 * 2명
					인 건 비 72,576
11. 집계 정리	7급	8명	192	6,569,472	

2.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실기 수수료 원가산출표(협회)

○응시대상: 1,600명

○응시과목: 실기검정

업무처리별 내역	담당자	인원수	소요시간	원 가	비 고
○본 부					
- 연간 계획수립	3급	1명	40	177,360	
- 합격자명단 및 실적 관리	3급	1명	24	106,416	
- 인쇄비	5급	1명	8	89,976	2,000매 * 20원
○지 방					2,000매 10원
- 교육시행	4급	14명	56	202,720	500매 10원
- 검정시행	3급	14명	800	3,547,200	30분 1,600건
- 접수 및 합격 대장 작성관리	5급	14명	300	936,600	2시간 150건
- 출장여비(20회)				3,410,000	89년도 예산기준
- 임대료				720,000	"
- 기타 부대비				459,514	"
(전체비용의 5%)					
				9,649,700	

3.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수첩발급 원가산출표

업무별처리 내역	담당자	인원수	소요시간	원 가	비 고
○신청서 배부 및 접수	5급	1	10분	520	○연간발급 기준:9,000
○내역서 작성 및 본부 송부	5급	1	15	780	
○합격자 명단 대조 및 심사	3급	1	10	740	
○등록사항 통보서 작성	기능직	1	5	165	
○자격취득자 등록부 작성	"	1	5	165	
○자격수첩 작성	"	1	10	330	
○발송봉투 작성	"	1	2	66	
○서울체신청 송부	5급	1	3	156	
○월말실적	4급	1	3	180	
○인적사항보완처리	4급	1	1	60	
○반송수첩관리	4급	1	1	60	(240분 * 100건) ÷ 9,000건
○자격수첩관리	4급	1	0.5	30	(480분 * 24건) ÷ 9,000건
○접수(자격수첩)	9급	1	0.3	18	(60분 * 100건) ÷ 9,000건
○대조확인	9급	1	5	300	(10분 * 250건) ÷ 9,000건
○발 송	9급	1	3	180	(240분 * 12건) ÷ 9,000건
○기술자격수첩인쇄				300	
○기술자격 등록신청서				20	
○우송봉투				15	
○통 보 서				10	
○기타 인쇄물				20	

부 록 5

1. 무선기기 형식검정 수수료 원가산출표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장치)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 무 처 리 자 등 급	소 요 시 간
-접 수	8급	40분
-측정시험	7,8급	2,568분
-보고서 작성	7급	120분
-기타 부대업무	8급	60분
합 계		2,788분

나.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비 고
-접 수	2,615	
-측정시험	7급: 91,528 8급: 83,952	
-보고서 작성	8,554	
-기타 부대업무	3,923	
-감가상각비	24,370	
-광열비(소모전력비)	570	
-기타 부대비(전체의 20%)	43,102	
합 계	258,614	

2. EMI(전자파장애) 측정 수수료 원가산출표(구내교환기)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 무 처 리 자 등 급	소 요 시 간
-접 수	8급	40분
-측정시험	7급	790분
-보고서 작성	7급	60분
-기타 부대업무	8급	60분
합 계		950분

나.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비 고
-접 수	2,615	
-측정시험	56,313	
-보고서 작성	4,277	
-기타 부대업무	3,923	
-감가상각비	166,583	
-광열비(소모전력비)	1,309	
-기타 부대비(전체의 20%)	47,004	
합 계	282,004	

3.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위탁 수수료 개별원가 산출조서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 무 처 리 자 등 급	소 요 시 간
-접 수	7급	30분
-서류심사	"	30분
-교 정	"	10시간
-보고서 작성	"	1시간
-기타 부대업무	"	1시간
합 계		13시간

나. 비용원가표

대 상 기 기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위탁 수수료		비 고
	현 행	원 가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	16,000원	72,691원	

4. 전파수탁 측정 수수료 개별원가 산출조서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 무 처 리 자 등 급	소 요 시 간
-접 수	7급	30분
-측 정	7급: 1명	
○주파수 측정	8급: 1명	1시간
○전계강도, 잡음		2시간
스프리어스, 점유		
주파수대역폭 측정		
-보고서 작성	7급	1시간
-기타 부대업무	7급	30분
합 계		5시간

나. 비용원가표

대 상 기 기	전파 수탁 측정수수료		비 고
	현 행	원 가	
-주파수 측정	250원	22,366원	1.1%
-전계강도, 잡음,스프리어스	2,800원	32,866원	8.5%
-점유주파수 대역폭 측정	2,400원	32,866원	7.3%

5.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 원가산출표 (전송설비류)

가. 업무처리 과정 및 소요시간

업 무 처 리 과 정	업 무 처 리 자 등 급	소 요 시 간
-접 수	8급	40분
-서류검토	6급	16시간
-형식승인 심의	4,5급	1시간
-보고서 작성 및 결재	5,6급	3시간
-형식승인	6급	30분
-기타 부대업무	6급	60분
-사후관리	6급	8시간
합 계		1,810분

나. 비용원가표

업 무 처 리 별	원 가	비 고
-접 수	2,615	
-서류검토	75,520	
-형식승인 심의	11,798	
-보고서작성 및 결재	30,786	
-형식승인	2,360	
-기타 부대업무	4,720	
-사후관리	37,760	
소 계 (인건비)	165,559	
-인 쇄 비	130	
-소모품비	100	
-기타 부대경비(20%)	33,157	
합 계	198,946	

부 록 6

1. 부처별 허가관계 민원수수료 현황

부 처 별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수수료	변 경	재허가
외 무 부	유학여권 발급신청	6일	10,000	3,000	30,000
	여권 발급신청	6일	30,000	3,000	30,000
	법인설립허가 신청	18일	6,000		
내 무 부	부동산 중개업허가	7일			
	법 인		20,000		
	공인중개사		5,000		
	중 개 인		3,000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허가	20일			
	총포제조업		30,000		
	공기총 및 도검 제조		20,000		
	총포수리업		10,000		
	폭약, 화약제조		50,000		
	화공품 제조		20,000		
	총포·도검·화약류 판매업 허가	10일			
	총포, 도검		15,000		
	화 약 류		20,000		
	총포·도검 소지 허가신청	15일			
	업총, 소총, 권총		5,000		1,000
	공기총, 도검		3,000		1,000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	10일			
	1급 저장소		10,000	1,000	
	2급 저장소		8,000	8,000	
	3급 저장소		5,000	5,000	
	신용조사업 허가신청	15일	10,000	400	
	광고물 표시(게시) 허가신청	7일	500-		
			400,000		
	토지굴착 허가신청	20일			
	굴 착		30,000		
	중 굴		15,000		
	소방설비 공사업 면허신청	60일			
	업 종 별		20,000		
	방 염 업		10,000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신청	12일	20,000		

부 처 별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수수료	변 경	재허가
관 세 청	항외 하역 허가	즉시	40,000		
	수 출		10,000		
	보세구역 설명 특허신청	14일	45,000		45,000
	보세공장 설명 특허	14일	45,000		
	통관업 신고	7일	10,000- 75,000		
농림수산부	비료 생산업 허가신청	30일	20,000		
	농약 제조업 허가신청	30일	2,000		
	방제업 등록신청	30일	2,000		
	동물병원 개설 허가신청	7일	10,000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3일	20,000		1,000
농촌진흥청	수립 면허신청	즉시			
	일 반 인		10,000	10,000	10,000
	주한외국인		5,000	5,000	5,000
수 산 청	수산물운 운반선 외항 운항사업 면허신청	7일	20,000		
상 공 부	무역업 허가	5일	20,000	10,000	
공업진흥청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신청	10일	30,000		10,000
	한국 공업규격 표시허가	40일	30,000		
동 자 부	열공급 사업 허가신청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허가신청	20일	90,000	90,000	
	연탄 제조업 허가	10일	30,000	30,000	
	광업권의 설정 출원	20일	20,000	2,000	
	일 반 광	26일			
	사 광 류		57,000 15,000 31,110-	400	
건 설 부	토지분할 허가	5일	32,090 2,000-		
	건축허가신청	2 일 - 24 일	200,000 5,000		
	용별 및 공작물 등의 축조허가		200,000		
		2일	30,000		
	해외 건설업 면허신청		40,000-		
	건설업 면허신청	60일 60일	60,000 30,000		10,000 -7,000
	증기 대여업 허가신청		30,000	30,000	
	증기 정비업 허가신청	20일 20일		30,000	

부 처 별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수수료	변 경	재허가
환경청	배출시설 설치 허가	20일	10,000		
	특정 독물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허가	25일			
	수 입 업		1,000		
	제조사용업		10,000		
	독극물 판매업 허가	5일	10,000	10,000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20일	20,000	10,000	
	산업 폐기물 처리업 허가	30일	40,000	20,000	
교통부	시설철도 및 전용철도 경영면허	20일	5,000	1,000	
	자동차 운수사업 경영면허	15-25일		1,400	
	신 청				
	기 본		14,000		
	차량1량당		2,000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등록신청	10일	16,000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차량 (개인택시)	15일	16,000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신청	30일	20,000	10,000	16,000
해운항만청	창고업 허가신청	10일	1천14,000	14,000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신청	13일			
	내 항		10,000		
	외 항		20,000		
체 산 부	창고업 허가신청		14,000	14,000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신청	32일	20,000	20,000	15,000
	무선국 허가	20일	3,200-	3,200-	2,600-
			4,000	40,000	8,300
	고주파 이용설비 허가신청	20일	3,200-		
			8,400		
	이동공중 무선전화 및 주파수 공용 무 선전화 허가	7일	12,000-		
문화공보부	간이 무선국 허가신청	7일	40,000		
			12,000-		
			40,000		
문화공보부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신청	15일	10,000	90,000	

2. 부처별 검사관계 민원수수료 현황

부 처 별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수 수 료	변 경
농림수산부	농산물 검사신청	5일	5-50	
	상품건본 검인신청	3일	점당 60	
산 립 청	버섯 종근 검사신청	7일	5/1,000이내 (판매가격)	
수 산 청	수산물 검사신청	5-7일	수산물 검사법 시 행규칙 별표 14에 의한 검사수수료 200	
	원양냉동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신청	3일		
	어선총톤수(측정, 계측) 신청 5톤 미만	2일	1,800-6,900	
	5톤 이상	5일	10,500-120,000	
건 설 부	양수기 점검의뢰	3일	1,500	
	중기형식 확인 검사신청	15일	20,000	
환 경 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검사신청	15일	국립 환경연구원 시험 의뢰 규칙 시험수수료	
교 통 부	자동차 확인 검사신청	즉시	신고요금	
	자동차 신규 검사신청	"	13,065	
	자동차 계속 검사신청	"	8,640	
	자동차 임시 검사신청	"	8,640	
	자동차 재 검사신청	"	4,320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신청	"	8,640	
	기계, 기구 정도 검사신청	30일	56,210	
해운항만청	선박 검사신청	14일	500-75,000	
	제조 검사신청	25일	500-400,000	
	임시 항행 검사신청	2일	500-2,500	
	예비 검사신청	25일	500-2,500	
	미분정광적재 검사신청	3일	2,000	
	위험물 선박운송 검사신청	7일	5,000-50,000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검사신청	5일	1,200	
체 신 부	무선국 준공 검사신청	20일	7,000-174,000	
내 무 부	수압 검사신청	4일	2,000-6,000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완공 검사 신청	4일	6,000-10,000	

3. 부처별 검사관계 민원수수료 현황

부 처 별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수 수 료	변 경	재허가
공업진흥청	전기용품 형식승인	30일	15,000		
건 설 부	중기 형식승인 신청	20일	20,000		
교 통 부	자동차 형식승인 신청	25일	20,000		
해운항만청	해상오염 방지기자재 형식승인	1일	1,000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신청	14일	60,000-90,000		1,000
	형식승인 신청	7일	3,000		
	형식승인 시험	5일	23,000-419,000	3,000	200
체 신 부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30일	75,000-250,000		

4. 부처별 시험관계 민원수수료 현황

부 처 별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수 수 료	비 고
수 산 청	어구자재 물리적(어망사의 장력, 신장율, 탄성율, 망목, 고정력, 결정 강도, 마찰) 성능시험 의뢰	7일	각 1성분 1,500	
	어구 부속구류(부자 및 침자) 물리적 성능시험 의뢰	10일	각 1성분 1,500	
	기타 어구 및 자재의 적용성과 성능시험	10일	각 1성분 1,500	
교 통 부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	25일	신고요금	
철 도 청	철도용품 시험신청	3-61일	940-644,330	
해운항만청	선박총톤수 측정(계측) 신청	14일	750-80,000	
	선박 검정신청	5일	80-32,850	